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 윤 덕 경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 이 미 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 윤 정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 희 영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교육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협력진(가나다순)

- 권영웅 선임상담원(가톨릭관동대학교 양성평등상담센터)
- 김은경 수석연구원(한양대학교 인권센터)
- 김정희 책임연구원(상명대학교 양성평등센터)
- 노은영 전문상담원(용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이경희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이소담 전문상담원(동국대학교 인권센터)
- 조누리 전임연구원(부산대학교 인권센터)
- 최지나 전문상담원(연세대학교 성평등상담소)
- 허은영 센터장(성인권교육센터)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6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7
가. 활용방안	7
나. 기대효과	7

II.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1.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11
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현 주소	11
나.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13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관련 법	16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	18

Ⅲ.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매뉴얼

1. 학생 간 사건	23
□ 매뉴얼 작성 개요	23
가. 단톡방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24
나. 디지털 성폭력	35
다. 지인 음란사진 합성사건	45
라.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	52
마. 스토킹	59
바. 데이트 성폭력	66
사. 외국인학생 성희롱·성폭력	75
2. 교수-학생 간 사건	83
□ 매뉴얼 작성 개요	83
가.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84
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90
다. 논문지도/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97
라.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	103

Ⅳ.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 사건처리 매뉴얼	113
가.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	113
나. 상담	115
다. 사건 신고	118
라. 조정(중재)	122
마. 조사	124
바. 심의·의결	127

사. 징계	129
아. 형사고소 및 고발	132
2. 2차 피해	133
가. 2차 피해 정의	133
나. 2차 피해 유형	134
다. 2차 피해 대응방식	135
▪ 참고	137
▪ 참고 문헌	139

표 차례

<표 II-1> 현행법 상 ‘성희롱’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17
---	----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흐름도	7
[그림 II-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구제 절차의 개관	19
[그림 IV-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초기 사건처리 단계	112
[그림 IV-2] 사건 신고 과정	116
[그림 IV-3] 조정(중재) 과정	120
[그림 IV-4] 심의·의결 과정	125
[그림 IV-5]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에 따른 사건처리 과정	12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미투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즉 스쿨미투이다. 초중고, 대학을 막론하고 스쿨미투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는 교육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 또한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 및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발족, 활동하고 있다.
- 대학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은 일반 사회조직과는 달리 학생→학생, 교수→학생, 직원→학생 등 그 구성관계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사건의 성격 또한 상이하며, 대학별 사건 처리 구조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해결이 어려운 구조에 있다.
 - 특히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가 많은 경우 성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나 다른 한편으로 학생의 진로와 경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권력관계에 의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발적인 신고와 사후 처리가 쉽지 않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캠퍼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생 간 언어적 성희롱은 친한 친구사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음담패설이나 농담으로만 인식하거나 친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점, 교수,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은 졸업, 학위취득, 취직이라는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그 침해가 장기간 수회에 이르고 있으나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은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내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족하고 사건의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그 방법, 내용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들이 많은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성희롱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건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건의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연간 1~2시간만으로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일부기관들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학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으나, 대부분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매뉴얼이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개발되지 못하였다. 그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의 매뉴얼(2015)은 사건 발생과 그 후의 처리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학내 상담소 직원이나 사후처리 관련자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수집된 사례의 경우에도 학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맥락별 사례가 아니라 사건처리 및 해결에 대한 사례들이 수집, 분석되어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속 성희롱, 성폭력 사례를 발굴 및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원만한 학업생활 및 연구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 기존의 사건 처리 관계자 중심의 매뉴얼이 아닌, 학내 전체 구성원에게 적합한 예방적 차원의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상황별, 맥락별 예시를 소개함으로써 학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건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하다.
 - 본 연구가 제시하는 매뉴얼은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학생 간 사건과 교수-학생 간 사건으로 나누어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사건인지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사건관계자별로, 예컨대 피해자, 가해행위자 이외에 친구, 선배, 학과, 지도교수, 학생회 및 동아리 대표,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 제3자별로 제시하여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성희롱, 성폭력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분석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집 및 분석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유형과 형태 분류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상황별 매뉴얼 개발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매뉴얼 제시
 - * 학생 간 사건 : ① 단독방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② 디지털 성폭력 ③ 지인 음란 사진 합성사건 ④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 ⑤ 스토킹 ⑥ 데이트 성폭력 ⑦ 외국인학생 성희롱·성폭력
 - * 교수-학생 간 사건 : ①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②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③ 논문지도/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④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 사건처리 매뉴얼 : ①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 ② 상담 ③ 사건 신고 ④

- 조정(중재) ⑤ 조사 ⑥ 심의·의결 ⑦ 징계 ⑧ 형사고소 및 고발
- 2차 피해 : ① 2차 피해 정의 ② 2차 피해 유형 ③ 2차 피해 대응방식

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수집, 분석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후처리 관련 제도 및 정책자료 검토

○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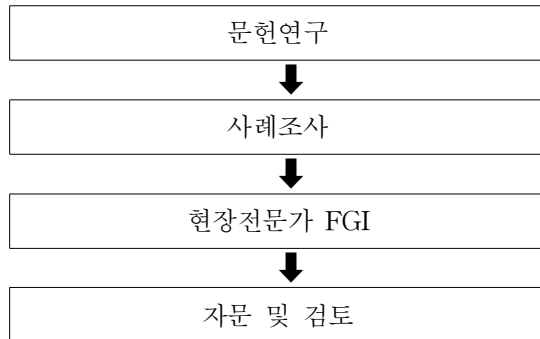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자료 수집, 분석
-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 또는 학생생활상담소 대상 의미있는 사례 발굴 및 조사

○ 현장전문가 FGI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대응에 대한 현장 상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초점집단인터뷰 진행
- 대학 내 성평등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담당자 20명(서울·경기권 13명, 충청권 1명, 경상권 2명, 전라권 2명, 강원권 2명) 대상으로 심층면접

○ 자문 및 검토

- 사례조사 분석 결과 및 사례 분류에 대한 틀 검토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사후처리 제도 관련 안내 검토
- 그 외 자료구성 관련 의견 수렴 등



[그림 1-1] 연구흐름도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 대학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 학생 및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활용
 -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
 - 신입생 및 신입 교원 오리엔테이션의 교육자료로 활용
 - 학교 홈페이지, 교내 주요 장소에의 비치 등 접근성 높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자료로 활용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사건처리 매뉴얼로 활용

나.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모색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상황별 매뉴얼은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들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인지 이후 및 사건처리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사건에 직접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대응 이외에 주변인 예컨대 친구 및 선배, 학과 교수, 학생회 및 동아리 대표 등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이 매뉴얼은 사건발생 이후 대응방법 안내와 함께 일반 학생 및 교수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 및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II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1.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

1.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현 주소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양상은 대학 밖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성희롱에서 성추행,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은 성별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여성피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권력관계에서 낮은 지위를 갖는 남성이나 사회적 약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자유와 소극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데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측면을 내용으로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폭행·협박에 의하면 강간·강제추행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며, '위력'과 같은 요건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침해가 있다고 느껴도 폭행·협박 등의 전제 조건이 없다면 성폭력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
-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은 사건내용이 명확한 경우가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건이 신고할 수 있는 사건인가,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일은 대학 밖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 미투운동과정에서의 문제제기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과 관계된다. 교수-학생사건의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차 피해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이후 가족·친구, 언론,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이 사회의 다른 폭력과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의한 2차 피해는 주로 주변인이나 가해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소문 등으로 피해를 가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사건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피해자를 진정한 피해자일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의 많은 부분 예컨대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협하고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수사,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찰, 판사, 검사에게도 이루어져 성폭력에 대한 바른 판단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학생과 교수 간 성희롱 사건에 관련된 과기환송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470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 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자칫 법원이 성희롱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 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성희롱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희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 현재 우리 법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 성희롱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법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각각 ‘직장 내 성희롱’과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의 정의와 유사하다.

-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희롱의 종류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로 구분된다¹⁾.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이다(신상숙 외, 2012:11).
-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중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는 동 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특수강간 등(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을 말한다. 또한 「형법」상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 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1)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함.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말함. 기타 성희롱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으로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함(주혜진·오윤희, 2018:7).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도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 이외에도 형법상 음행매개(제242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제288조), 강도강간(제339조) 등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형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말함. 이 규정은 피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연나이)일 때 적용되며, 대학교 1, 2학년의 경우 이 연령에 해당될 수 있다.

○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성폭력(범죄)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대체로 구분될 수 있지만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유사한 상황이어도 행위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포르노 배우의 나체사진을 직접 들고 와서 보여 주었다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나체사진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이선경, 2017:15).
- 일반적으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은 중재나 조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구제조치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나 대학 내 성폭력은 대학 내 심의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 심의절차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대학 내에서의 징계가 가능하다.

○ 성폭력 관련 용어

- ‘성폭력’은 법적 용어로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의미한다.
- 언론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와 달리 강제추행을 ‘성추행’으로, 강간을 ‘성폭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99).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관련 법

○ 성희롱 방지조치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제31조)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면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특히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1.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표 II-1> 현행법 상 '성희롱'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구분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요건
양성평등 기본법	성희롱의 정의	제3조 제2호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3. 성희롱 행위내용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제2조(정의) 제2호 1.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3.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원칙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국가인권 위원회법	성희롱의 정의	제2조(정의)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라목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2.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행위 3.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자료 : 신상숙 외(2012), p.10.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동 시행령 제20조에서 성희롱 방지조치의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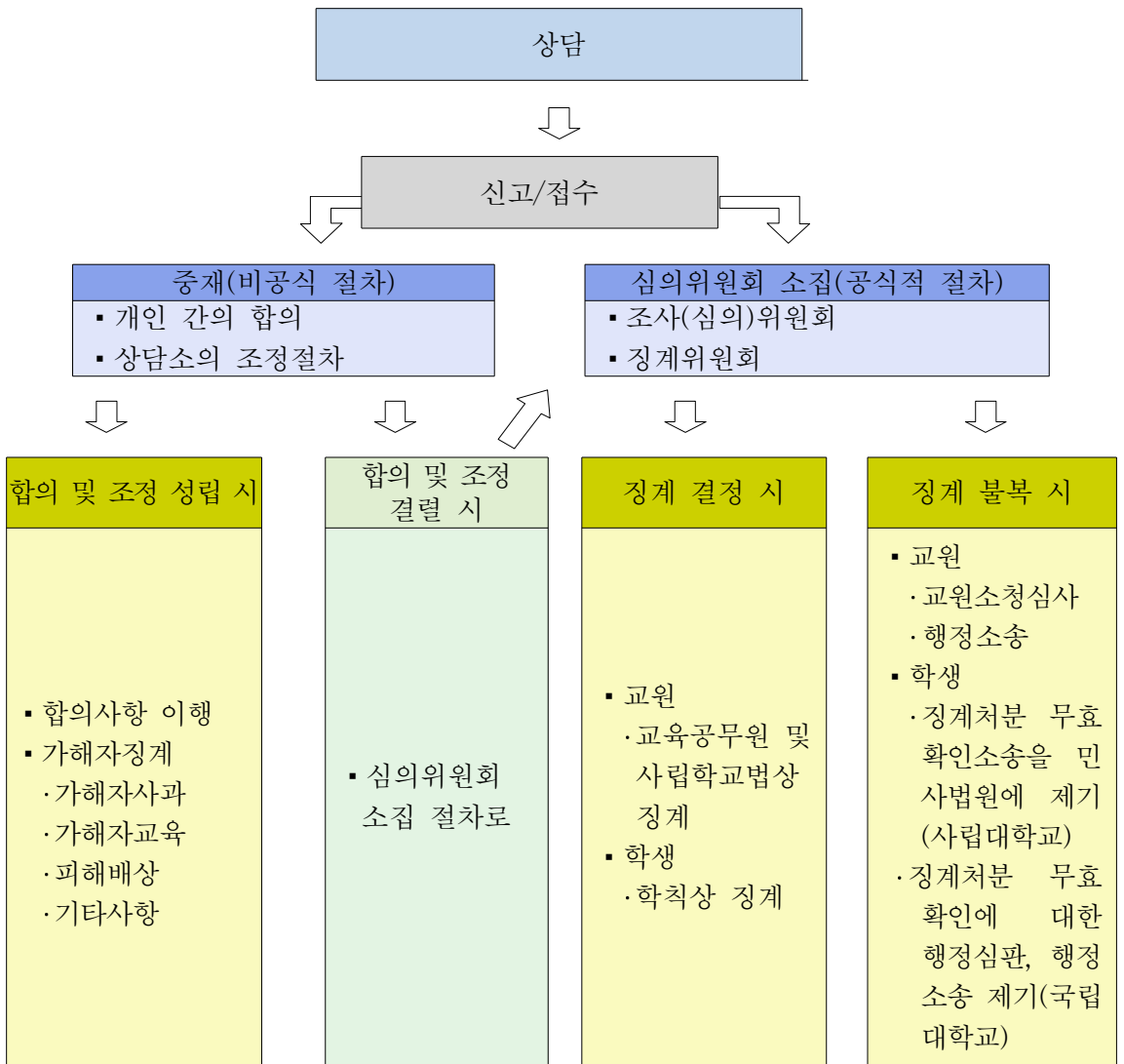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공단체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므로 대학들은 당연히 동 지침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 대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이원적 구조로 진행된다. 그 하나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학칙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사건 접수 및 조사, 합의 및 조정절차, 조정절차에 따른 가해자 조치, 징계요청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사항에 관한 법규와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의 조사, 징계결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이다(신상숙 외, 2012:17).
- 현행법에서는 대학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와 피해구제 관련 절차의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 내 피해구제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구제절차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신상숙 외, 2012:16).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신고, 접수 이후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중재와 심사위원회 소집에 의한 조사와 징계요청의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다.



자료 : 신상숙 외(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p.21.을 약간 수정

[그림 II-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구제 절차의 개관

III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매뉴얼

1. 학생 간 사건
2. 교수-학생 간 사건

1. 학생 간 사건

□ 매뉴얼 작성 개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학생이 가해행위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상담이나 조사 건수가 가장 많다. 대학시절 학생들은 장래 커리어를 위해 학업을 추구하며 인적교류를 통해 학내 활동에 참여한다. 교내 성희롱·성폭력은 이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응행태는 피해사실 숨기기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심리·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대학당국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와 가해행위자 징계 원칙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숨기고 고통 받는 피해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과 처리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신뢰할 만한 친구, 선배, 교수와 상의하여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시도가 피해자의 빠른 치유·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본 대응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 가해행위자, 친구·선후배와 같은 신뢰관계인, 교수,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등 각 행위주체가 초기단계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매뉴얼의 사례와 행위주체별 행동 대응은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피해자 지원과 사건처리 참여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 구성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단톡방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지인 음란사진 합성, 성추행, 스토킹, 데이트 성폭력, 외국인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유형화하여 대응 행동 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가. 단톡방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1) 사례

(사례1) 대학생 A는 우연한 기회에 같은 학과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다. A는 이 단톡방 대화 내용에 자신을 포함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성적 묘사, 성관계 묘사, 성적 비하 발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평소 학과에서 예의 바른 태도로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남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어 더욱 놀랐다. 단톡방에 실명 거론이 된 피해 여학생 몇 명에게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배에게도 의논하였다.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상담을 신청하였다.

(사례2) 대학교 같은 학과 남학생 5명(V, W, X, Y, Z)은 팀 과제 작업 공유를 위해 단체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같은 과 신입 여학생 4명(A, B, C, D)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모평가, 다리등급 매기기, 가슴크기, 텐프로 발언, AV 배우 발언, 여학생 몰래 찍은 사진 주고받기 행위를 한 달 간 하였다. C의 남자친구 H는 우연한 기회에 X와 술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단체 카톡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이때 H는 X가 촬영한 여자친구 C의 다리 사진을 보고, 핸드폰을 뺏어 카톡방 내용을 상세히 보게 되었다. H는 여자친구 C에 대한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보고 격분하여 경찰서에 X를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증거로 핸드폰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핸드폰을 돌려 달라는 X의 강력한 항의에 H는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핸드폰을 X에게 돌려주었다. 여기서 X는 H가 핸드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모든 사진을 캡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H는 관련 내용을 캡처하였다.

다음 날, H는 여자친구 C에게 전 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달하며 카톡 내용을 보여 주었고, 뒤이어 C는 A, B, D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카톡 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A는 경찰신고와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동시에

신고하자고 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했다. 반면 B는 법적 처벌보다 자신 등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C는 경찰 신고 전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켜보고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경찰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가해자들이 학칙에 따라 처벌받고, 이들과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확실하게 동선을 분리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했다. D는 A, B, C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가해행위자의 사과문 작성 및 게시가 필요하고, 학과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 조사해주기를 바랐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초기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학내에서의 사건처리를 요청할 것인지 생각한다. 가해 행위자 휴대폰에 저장된 관련 영상 등 메시지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행위자로부터 확보하도록 하거나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과 의논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다.
-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최선인지 선택하는데, 정보 부족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상담을 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심리적 혼란으로 사건 해결 절차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도 있다.
- 학교 측의 주도로 사건 처리를 원한다는 입장이 결정되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 피해자들과 신뢰관계에 있고 현명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상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당사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부탁한다.
- 사건 내용이나 가해행위자 및 관계인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대응

- 가해행위자에게 단톡방 카톡 내용으로 피해자가 힘들어 하니 당분간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린다. 이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가해행위자에게 공지한 것을 이메일, 문자, 카톡, 전화통화 등의 증거 자료로 보관한다.
- 가해행위자나 관계인과 불필요하게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이들에게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인지 및 치유

- 피해자는 불면, 식욕 부진, 소화불량, 가슴 통증, 이유 모를 눈물,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감,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 사건 인지 전후 상황 및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상태 및 변화에 주목하며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학생 심리 상담센터,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에 대한 상담 혹은 치료가 필요할 시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연계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 자신을 위해 어떤 사건 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한다. 정보 부족으로 결정이 어려우면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고 도움을 구한다. 심리적 혼란으로 결정이 어려우면 심리상담을 먼저 받고 안정을 회복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관련 증거는 꼼꼼하게 확보해야 한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과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가까운 지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본의 아니게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은 피해자에게 가장 큰 지지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문제를 이들에게 드러내기 꺼리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 사건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신고할 학내외 기관을 선택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할 경우,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여 절충안을 만든다.
-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상담을 받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한다.
-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피해자 측에 대한 가해자 측은 학교 게시판이나 학교신문에 공개사과 함. ② 피해자 4인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2년간 자발적으로 휴학함. ③ 학교 측은 가해자들이 해당 학기에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간분리 조치를 취해줌. ④ 최소 8회 이상 가해자 대상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함. ⑤ 가해행위자로 하여금 카톡방의 피해자 성희롱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함. ⑥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 성희롱 사진이 다른 경로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 조사함.

○ 관련 증거 수집

-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무리해서 수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행위자의 핸드폰에서 성희롱 관련 내용을 보았으면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받는다.
-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모두 증거로 보관한다.
- 경찰신고 없이 학내에서 사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단톡방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담당자와 의논하여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을 강구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행위자 동의 없이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전기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알거나 채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가해행위자

○ 사건조사에 협조

- 단톡방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요구되는 절차에 협조한다. 경찰 조사 시 휴대전화 기기 전달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불리할 작용할 수 있다.
- 대학 내 성희롱고충 처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사건 해결에 협조하며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한다.
- 피해자가 연락 금지와 공간분리를 요청하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노력을 한다. 공간분리 등의 임시조치를 준수하고 피해 당사자나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 범죄행위인지

- 여학생 외모, 신체에 대한 성적 묘사, 성관계 묘사행위(사례1)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3조). 또한 여학생 몰래 찍은 사진을 단톡방을 통해 제공한 행위(사례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4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선고 2013고단1183 판결).

○ 개인신상 비밀유지 준수

- 당사자 및 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2차 가해 금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 험담을 SNS에 올리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삼간다. 피해자는 처음의 성희롱보다 이후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로 2차 가해는 징계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행위자는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 단체 카톡방 구성원 외 다른 사람들과 표현과 영상을 공유했다면 수신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폐기하고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심리적 불안 및 방어심리로 자신의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

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절대 삼간다.

-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 신상을 누설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2차 가해가 고려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도움 요청

-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해행위자는 주위의 비난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학내 학생상담기관이나 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성희롱적 언행과 표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가 수용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체 카톡방에서 사적 내용의 글이나 표현 공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반성한다.
-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피해자에게 정보 및 정서적 지지 제공

- 피해자에게 건강, 일상생활, 학업에 대해 불편함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본인의 힘으로 돕기 어려운 경우 대학 내 학생심리상담소, 정신건강의

학과,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을 안내한다.

- 사건 해결과 관련해서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친구나 선 후배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화를 피해자가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한다.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준다.

○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나 가해행위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비난·협박하지 않는다.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
- 단톡방 성희롱을 인지하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대학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협력한다.

라) 학과 교수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가 교수에게 직접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면, 사건을 알려준 혹은 피해자를 돕는 학생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 생활에서의 고충,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방법이나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 시 교수에게 사건 상담을 하도록 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과 소속인 것을 감안하여 같은 공간에서의 수장이나 대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선 관리를 해야 할지 중재하는 기관인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상의한다.
- 사건당사자가 사건관련 정보를 유출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힘쓴다.
- 학과 학생 혹은 관계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면 피해자 잘못된 아님을 인지시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

○ 교내 성희롱고충상담기구와 협력

- 교수는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과 상의하며 사건 해결에 노력한다.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교육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영상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실태 및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절차에 대한 설명제공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에게 사건해결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해결에서 원하는 것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 최초 상담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센터의 방침과 기준, 사건조사심의 및 징계절차, 학교

규정, 관련 법령 및 기관에 대해 안내한다.

- 적절한 증거확보 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 상담, 사건조사, 중재, 사후조치

- 필요 시 피해자 동의하에 사건발생 학과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피해 사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서와 직원들에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건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가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 가해자가 학내에 게시할 공개사과문을 작성할 때, 내용이나 표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제공하여 중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중재로 사건이 종료되면 중재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사후관리 한다.
-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알리고 이행하도록 한다.
- 피해자 및 가해행위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학내 심리상담기관에 연결해준다.
- 가해행위자가 사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조사심위원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한다.
- 경찰에 신고되면 카톡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경찰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 동의하에,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경찰에 사건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어 카톡자료를 취득할 수 있음을 가해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공지한다.

- 단체 카톡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아니나 ‘구성원 모두가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고 과급력이 매우 강하기에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가해행위자에게 인식시킨다.
- 필요하면 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 후 그 결과를 본부 관련 부서로 전달하고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한다.
- 해당사건 처리가 종결된 이후 모니터링,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위자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피해자 심리적 치유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 재발방지, 공동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 사건발생 학과에 외모평가 및 동료인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 성희롱임을 인식시키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단체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 단체 카톡과 같이 통신매체를 통한 사건의 특성이 반영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가해자들에게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나. 디지털 성폭력²⁾

1) 사례

(사례1) A는 같은 과 B와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B와 헤어지고 몇 개월이 지난 요즘 들어, 학과 동기 일부가 A 자신을 어색하게 대하거나 피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얼마 후 A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에 포르노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친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고 분노하여 A는 B에게 연락하여 따져 물었다. 하지만 B는 자신이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A와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전 핸드폰을 바꾸느라 메시지와 영상 내용을 다 지우고 팔았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했다. A는 영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영상을 삭제해주는 업체를 찾아 연락했는데, 한 가지 영상물을 각종 사이트를 찾아서 삭제하는 데 200만원이 든다고 했다. 다급한 A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과 빌린 돈으로 영상 삭제 작업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 A 자신의 동영상을 본 지인들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이러한 비용을 들이고도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공포와 무기력감을 느낀다. A 자신이 잘못하여 영상이 유출된 것도 아닌데, 졸업할 때까지의 학교생활도 막막하고 향후 사회생활에서 언급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례 2) A와 B는 같은 학교 학생이다.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A는 B를 종종 마주쳤는데 B가 가끔 긴장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서 이상하게 여겼었다. 어느 날 A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앉아 있는 B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다리를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B가 도서관 밖에서 어떤 여학생의 다리를 찍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경찰 신고를 생각했지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여 망설이다가 큰 결심을 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A는 학내에서 공간분리 등 보호를 받기 원하고 B가 학교에서 공식적인 처분을 받기를 위하여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도 신고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디지털 성폭력으로 정의함. 디지털 성폭력은 동의 없는 촬영, 동의한 촬영이지만 동의 없는 유포, 촬영물 유포 협박,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장면 유포 등 다양함. 이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구체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이를 유포하는 행위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 유포, 판매, 상영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을 통신매체를 통해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관련 법에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음.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성폭력 범죄이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고 학내에서의 사건 처리만 원하면, 가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저장된 사진을 요청하거나,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행위자로부터 사진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과 의논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다.
-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건 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한다. 정보가 부족하여 결정이 어려우면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심리적 혼란으로 결정이 어렵다면 심리상담을 먼저 받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증거확보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 측의 도움으로 사건 처리를 원하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 개인신상 비밀 유지 등 원칙 준수

- 신뢰하는 사람과의 상담이 필요하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 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사자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삼간다.
-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한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가까운 지인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및 신뢰관계인에게 도움 요청

- 사건인지 이후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신뢰할 만한 친구나 선후배, 학교의 성폭력사건 처리기관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한다.
- 자신은 피해자이므로 사람들에게서 ‘사생활 문란’ 등의 편견이나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 이와 관련하여 2차 피해가 주변에서 진행된다면, 신뢰관계의 교수나 성희롱고충 처리기구, 선배 등을 통해 2차 피해 금지 등에 대해 조력을 구한다.
- 자신이 당면한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명확히 동의하였는지, 자신이 원한 것이었는지, 원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나 친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유포자가 학내 구성원인 경우 학교 측에 가해행위자를 대상으로 징계나 접근금지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에 대한 인식

- 불면, 식욕 없음, 소화불량, 가슴 통증,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걱정, 자책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에 주목하고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심리상담센터,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사건과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몸 상태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와 관련된 지원을 학교 측에 요청한다.

○ 불법영상 유포 확산 제한 노력

- 유포된 사이트를 직접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심신 안정을 위해 대리인이나 조력자에게 유포 사이트를 찾아줄 것을 부탁한다.
- 동영상 유포자를 알면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유포 중단, 철회를 요청한다. 문자, 이메일, 전화로 유포자와 소통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자료로 보관한다.
- 유포된 사이트를 확인하면 조력자 등을 통해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계속 유포 중인 경우 사이버경찰청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의 사이버 동영상 삭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 가해행위자

○ 성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 누군가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 상대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거나, 상대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단438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396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20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3601 판결)가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단1183 판결), 유포만 하는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의 경우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가 동의한 촬영물이기에 유포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불법 촬영 등으로 유포된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2018년 9월 14일 시행).
- 가해행위자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내 학생상담기관이나 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 도움을 요청한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동의 없이 상대의 다리를 촬영하거나, 사귀는 관계에서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표현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피해자 요구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면 행위를 부인하고 방어하려는 입장을 취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해결에 협조한다.

○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 인지

-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비밀유지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은 후 상담을 한다.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2차 가해 및 유포확산 방지 노력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SNS에 올리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공간분리 등 임시조치를 준수하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위협이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자신이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포 확산 방지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출자료의 삭제는 법원 판결의 양형과정에서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3601 판결)가 있으므로 유출자료의 삭제 노력은 유리한 양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제317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 교내외 사건조사에 협조

- 경찰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의 설명을 듣고 절차에 협조한다.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을 경우라면 사과하고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사건 해결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실행한다.
-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정보통신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

-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한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피해자 지지 및 지원 제공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숙지시킨다.
- 누구도 피해 사실 외의 사회적 평판이나 성적 생활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불법 촬영물 유출자가 같은 조직 구성원이면 유포 확산 중단을 단호히 요구한다.
-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학과 교수,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전달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건강, 일상생활, 학업 등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도울 수 없는 것은 도움을 주는 전문 기관(학내 심리상담소, 정신과,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을 안내한다.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면 심리상담을 권한다.
- 사건해결과 관련해서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준다.
- 사건과 그 이후 해결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은지를 먼저 묻는다.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노력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편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는다.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협력한다.

라) 학과 교수

○ 피해자 지지와 지원 제공

- 불법 촬영물이나 이의 유포와 관련하여 고통 받는 피해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 피해자가 원하는 바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한다. 피해자가 면담을 부담스러워 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요구와 조력 방안을 논의 한다.
- 피해자가 교수에게 직접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알려준(혹은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학생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에서 힘든 것이 없는지,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해결방법이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학과 교수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 시 교수에게 사건 상담을 하도록 알린다. 교수는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 기관과 의논하며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피해자 보호조치

- 사건이 학내에서 처리 과정에 피해자(신고인)와 가해행위자(피신고인)가 같은 수업에 등록된 경우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어려움과 원하는 바를 파악하

여 가해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킨다. 피해자의 공결치리나 가해자 출석중단 등에 대해서 피해자(혹은 대리인)와 논의하여 지원한다.

- 2차 피해가 있는지 혹은 확산되는지 등에 대해 피해자(혹은 대리인)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한다.
- 피해자가 등록한 학과목 담당교수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장과 비밀유지를 요청하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 학과 예방교육 실시

- 학과 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확인되면 학과 및 학교 차원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후유증, 대처 방안에 대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정보와 서비스 제공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에게 사건해결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해결에서 원하는 것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피해자에게 사생활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의 권리에 대해 안내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사건 처리 시 가명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대리삭제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당사자 신분증빙, 사건처리 지원 동의서(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증빙)와 같은 사건처리 서류를 안내한다.
- 피해자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준다.
- 사건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 양 당사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내용에 대

해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삭제 차단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미조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예방교육 및 활동 지원

-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의 ‘영구삭제’는 불가능하다.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데, 이렇게 확산된 내용을 인위적으로 삭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최초 유포자가 자신이 올린 영상을 삭제하여도 이를 받아 보관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 삭제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디지털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영구삭제보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소속된 학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 피해자가 자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한다.
- 피해자 지지모임이나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학내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필요 시 의료, 상담, 법률서비스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다.

○ 심리치유 등 피해자에게 서비스 지원

- 피해자의 자책감을 없애고 불법 촬영물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자에게도 학내 심리상담기관에 연결해준다.

○ 가해행위자 대상 공지

-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알리고 이행하도록 한다.
- 가해행위자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반성과 책임을 지도 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게 한다.
- 가해행위자가 핸드폰 분실, 판매, 해킹 등의 변명으로 자신이 유출자가 아니 라고 주장하는 경우, 면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핸드폰 도난 시 GPS가 켜져 있으면 경찰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핸드폰 제조사 등의 계정에 연결하여 내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안내를 하여 자신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 도록 한다.

○ 외부기관 연계

- 피해자 지원 및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 권진흥원 및 경찰과 적극 연계한다. 경찰에게 가해행위자의 디지털장비, 핸드폰, 랜드라이브 등의 압수 수색과 증거수집, 영상삭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적극 요청한다.

다. 지인 음란사진 합성사건

1) 사례

B대학교 H학과에 재학 중인 K군이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소지하는 것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다. K군은 피해 여학생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 올린 사진에 여성 알몸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음란사진 파일을 소지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SNS 프로필 사진 등에 나온 피해자 얼굴을 음란물 성인 배우 알몸 사진에 합성하여, 마치 해당 피해자가 그러한 음란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동료 학생에게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들은 당혹감과 배신감에 시달렸다. 또한 해당 합성사진이 온라인상의 불법 음란 사이트들에서 유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초기에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합성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SNS 계정에 합성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형법상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피의자가 음란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현행법상 처벌이 미미하거나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2017년 11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 유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서 30일 동안 10만명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유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사건처리방안을 모색한다. 처음 피해사실을 인지한 학생은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온라인상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형사고소 및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신고, 피의자에 대한 대처, 언론 대응 등에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한다.
- 공동대처를 통하여 형사고소나 학내 신고 등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합의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는 추가 인원이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동행할 수 있다. 경찰신고, 학교 내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공동 창구를 만들어서 사안을 처리하고 외부와 소통하면 다수 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한 입장 번복이나 혼란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및 신뢰관계인에게 도움 요청

-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사건인지 이후 자신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신뢰할 만한 친구나 선후배, 학교의 성폭력사건 처리기관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한다.
- 자신들이 당면한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나 친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지인 음란사진 합성자가 학내 구성원인 경우 학교 측에 가해행위자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에 대한 인식

- 불면, 식욕 없음, 소화불량, 가슴 통증,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걱정, 자책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에 주목하고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심리상담센터,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사건과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몸 상태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와 관련된 지원을 학교 측에 요청한다.

○ 지인 합성사진의 확산 제한 노력

- 유포된 사이트를 직접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심신 안정을 위해 대리인이나 조력자에게 유포 사이트를 찾아줄 것을 부탁한다.
- 유포된 사이트를 확인하면 조력자 등을 통해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계속 유포

포 중인 경우 사이버경찰청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의 사이버 동영상 삭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 경찰에 신고

- 음란물과 합성된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 형법상 음화제조·소지죄로 신고할 수 있다.
-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모두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나) 가해행위자

○ 교내외 사건조사 협조 및 피해자 보호조치 수용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후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 것’, ‘피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할 것’ 등을 안내받는다.
- 피신고 학생은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동아리 활동 정지, 학과 내 활동 정지, 수업 중단의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같은 조치를 수용함과 더불어, 근신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한다.
-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학내 학생상담기관이나 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성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 지인 음란사진 합성행위는 「형법」상 음화유포를 위한 음화제조, 소지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 244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다(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제70조 제1항, 제2항).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지인의 얼굴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온라인 상 유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다.
-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인 합성물”이 온라인 상 유포되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피해자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피해자 지지 및 지원 제공

- 음란사진을 합성한 사람이 같은 조직 구성원이면 유포를 통한 확산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학과 교수,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전달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건강, 일상생활, 학업 등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도울 수 없는 것은 도움을 주는 전문 기관(학내 심리상담소, 정신과,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을 안내한다.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면 심리상담을 권한다.
- 피해 학생 및 피신고 학생이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는 경우 동아리 대표는 해당 피신고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즉시 제한하고 이를 피신고 학생에게 통지하여 피해 학생들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노력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편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는다.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협력한다.

라) 학과

○ 피해자 지원

- 피해 학생 소속 학과 교수들은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보장 및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고려한 학생 상담 등 학과 차원의 지원을 실시한다.
- 또한 피신고 학생 소속 학과 교수들도 현 상황을 주의깊게 인식하고, 해당 학생이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사건처리절차를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인다.
-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 피해학생들의 공간분리와 피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피신고 학생의 수강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피신고학생의 학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학내 구성원 인식개선 노력

- 가, 피해자 소속 학과들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지인 음란사진 합성사건의 발생으로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이해시키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라)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사건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제공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음과 동시에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증언을 수집한다. 사건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혼란을 고려하여 심리상담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은 피신고 학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피신고인의 입장과 진술을 확보하고, 본인의 동의 및 요청에 근거하여 사과문과 반성문, 각서 등을 받는다. 피신고 학생에게는 피의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안내를 하며, 사건처리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세히 안내하여 부지불식간에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본인에 대한 동아리 활동 정지, 학과 내 활동 정지, 수업 중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같은 조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 지인 음란사진 합성사건 발생의 심각함을 근거로 해당 학생에 대한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

○ 당사자 소속 학과 교수와의 협조체계 구축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은 피해 학생들이 소속한 학과의 학과장, 피신고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학과장 등을 각각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하여 피해 학생 소속 학과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보장 및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고려한 학생 상담 등 학과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 또한 피신고 학생 소속 학과 교수들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학생이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사건처리절차

를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라.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

1) 사례

A와 B는 학과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학과 임원인 A와 B는 함께 신입생 환영회 준비를 하였다. 밤 11시가 되어서도 업무가 끝나지 않자 둘은 B의 집에 가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집에 가는 길에 B가 술을 사자고 제안했고, A는 이에 동의해 맥주와 소주를 사서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업무를 논의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A는 술을 마시다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고, B는 잠든 A의 입술에 키스하고 몸을 더듬고 A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먼저 잠에서 깬 A가 자신의 속옷 중 일부가 벗겨진 것을 발견하였고, 거울에 비춰보니 목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했다. 깜짝 놀란 A는 자고 있는 B를 두고 가방을 챙겨 급히 밖으로 나왔다. 귀가 후 A는 목의 상처를 사진촬영 하여 친한 친구 C에게 메시지로 전송했고, 전화로 사건당일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음날 A는 담당 지도교수 D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전날 있었던 피해사실 및 B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상담접수를 받은 D는 A와 상담한 후, A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해보여 A의 동의를 받아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본 사건을 인계하였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 대학교 외부 기관에서 도움받기를 원하면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 경찰이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한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비밀보장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피해자 보호조치 대학 측에 요구

- 가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공간분리와 관련하여 학과에 요청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제출한다.

○ 증거확보 노력

- 피해사실 인지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당시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내용 등을 보관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피해 이후 자신의 심경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보장을 요구하며 심리적 혼란과 고통, 피해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의한다.
- 성폭행(강간)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 센터 등 성폭행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인지 및 치유

- 피해 인지 이후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변화를 점검하고 학내 성희롱 고충상

담기관, 심리상담센터,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불면, 식욕 없음, 소화불량, 가슴 통증, 이유모를 눈물,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감, 절망감 등의 신체적·감정적 변화에 주의한다.

- 사건과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몸 상태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와 의료지원 등을 학교에 요청한다.

나) 가해행위자

○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의 심각성 인지

- 성폭력 가해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자신의 성적 행동이나 언사가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99조).

○ 교내외 조사에 성실히 협조

- 조사 및 면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대학 내 성희롱고충 처리기관 또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성실하게 조사와 면담에 임해야 한다.

○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및 피해자 의사 존중

-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황하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보호 행동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피

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처벌보다는 가해행위자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반성하는 자세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징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시도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신상을 누설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화해를 시도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당사자 간 화해하는 것이지만, 이를 도모하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동은 피해자를 분노하게 할 수 있다.
-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학내 학생상담기관이나 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 도움을 요청한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피해자 지지 및 관련 정보제공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 책임론,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절대 삼간다.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쉬운 마음에,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와 같은 표현은 삼간다. 특히 피해자 옷차림, 생활습관, 연애 스타일, 피해자에 대한 인상, 소문으로 절대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한다.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혹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떠니?’와 같이 언급하는 것은 지양한다.

- 피해자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관련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하고, 피해자 심리 치유 상담이나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조사에 동행하거나 증거 수집을 돕는다.
- 피해자에게 비밀유지 약속을 하고, 관련 대화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건이 공론화되어도 피해자 신원을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지지하며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옹호하는 것이 주위사람의 역할이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피해자가 원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처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 해결 관련 대응 정보를 수집하여 알려준다.
- 가해행위자가 교내 구성원이면 대학 내 성희롱고충 처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피해자 보호, 임시 조치, 피해자 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라) 학과 교수

○ 피해자 지지 및 관련 정보제공

- 학생의 상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해주어서 고마워.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웠겠구나. 그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와 같은 말로 지지한다.
- 교수와 상담하는 사안이 민감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친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한다. ‘혹시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이 불편하면 친구와 함께 와도 괜찮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 피해자와 상담 사안이 민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가 오늘 나한테 털어놓은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 하렴’과 같은 말로 피해자에게 비밀보장을 약속한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 피해자의 건강, 일상생활, 학업 활동과 관련 상태를 확인한다. 가해행위자와의 공간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대학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 피해자와 상담한 후 피해자가 원하면 대학 내 성희롱고충상담 및 처리기관에 사건을 연계하여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관련 정보제공 및 피해자 욕구 확인

- 사건접수 단계에서 사건 처리 및 구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과 제한점을 설명한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기관의 방침과 기준, 사건조사심의 및 징계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학교 관련 규정,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한다.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로부터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한다. 가해행위자와의 합의 조정을 원하는지 혹은 징계를 원하는지에 따라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인지했다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조사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등으로 사건조사나 징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성추행 및 성폭행일 경우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 상담, 조정, 사건 조사 및 사후관리

- 상담 후 사건내용을 기록·정리하여 보존하며, 기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도교수 변경, 학부변경, 휴학 인정 및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한다.
- 피해자가 합의·조정을 원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필요하면 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의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한다.
-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대학 내 부서 책임자와 교수로부터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신원보장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 해당사건 처리가 최종 종결되고 난 이후 모니터링, 가해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가해행위자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피해자 심리적 치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가해행위자가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힘들어 하면, 학내 학생심리상담기관에 의뢰한다.
-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마. 스토킹

1) 사례

A와 B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같은 수업을 수강하였다. 조별 과제에 같은 조로 구성되어 과제를 위한 모임을 몇 번 가진 후 B는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 적극적인 표현이 남자답게 느껴졌던 A는 데이트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다. B는 첫 데이트 이후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대답이 늦을 시 여기저기 연락하여 A의 소재를 물어보았다. A는 B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데이트 요구를 거절하고 싶었으나 남은 조별 활동과 수업이 있어 두 차례 더 만났다. 종강 후에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거절의사를 밝히자, 집 앞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다. 또한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고 문자, 카톡, 이메일을 보냈다. A의 집 앞에 찾아가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지금 집에 있는거 아는데 왜 전화 안 받아?” 등의 내용을 담은 카톡을 보냈다. B는 A가 대답하지 않아도 혼자 화를 낸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등 순간순간 돌변하는 내용의 연락을 취했다. 몇 달이 지나도 계속되는 B의 행동에 A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꼈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자신이 겪는 상황과 관련하여 주변의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학교 성폭력 처리 기관을 통해 탐색해본다.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한다.
- 정보 부족으로 결정이 어려우면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심리적 혼란으로 결정이 어려우면 심리상담을 받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할 수도 있다.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작성한다.

- 스토킹 가해자가 학내 구성원이므로 학내 징계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가 아닌 가해 행위 중단과 이후 2차 피해 중단만을 원한다면 중재를 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공식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해결을 원하는지 탐색한다.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 스토킹 사건은 여타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신고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센터와의 상담 내용이나 기록이 경찰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까운 지인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은 가장 큰 지지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기 꺼리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구성원들에게도 비밀보장 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명확하게 거절의사 표시

- 먼저 가해행위자에게 짧고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자고 설득하거나 화를 내어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
- 가해행위자 언동이 폭력적이거나 직접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두려우면

문자나 메일을 보내거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의사 전달을 요청한다. 이후 가해행위자가 연락하여 피해자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도록 지인에게 당부한다.

- 다음과 같이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으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 연락해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부탁받은 지인은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도울 수 있다.
-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관련 증거 확보 및 정리

- 가해행위자가 연락 및 접촉시도를 했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해당 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와 감정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가해행위자로부터 받았던 문자나 편지, 통화내용도 증거로 확보한다.
- 스토킹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길 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 주변사람 및 교내외 기관에 도움 요청

-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주변사람이나 경찰,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다. 가해자 행동을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가해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취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혼자 지내지 말고, 주변 지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행위자가 예측 가

능한 생활 패턴이나 이동경로에 변화를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 경찰 신고

- 가해행위자의 행동이 과해진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스토킹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협박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 대상으로 구두 경고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것으로 가해자가 행동을 중단할 수 있다.
- 학교는 가해자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접근금지를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 가해자의 행위를 중지시키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모두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신고 등 학교 측에 도움 요청

-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 조치 뿐 아니라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나 해당과목 교수와 상담하여 학내 분리조치를 통해 보호받는 방안을 찾는다.
-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중재 혹은 징계 요청으로 신고하면, 가해 행위자는 학내 조사 절차 종결 때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촉 및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을 통보받는다. 또한 이를 어길시 가중 징계 될 수 있음도 통보받는다.
- 해당 교수님에게 직접 피해 내용을 알리고 학내 분리조치는 이동경로나 그룹 과제 시 가해자와 다른 그룹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나) 가해행위자

○ 과도한 집착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

- 악의 없는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굴욕감,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등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성희롱 또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교육권고나 벌금등의 처분이 따를 수 있다. 협박 및 폭력을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 경찰이나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다(대전고등법원 2006.7.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 또한 십수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한 피고인이 퇴거불응이나 불법정보 유통을 한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2.6.12. 선고 2012고단471 판결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 자신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즉시 언동을 삼가야 한다.
-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피해자가 사과를 원치 않을

시 피해자나 주변인을 통하여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피해자 지지 및 관련 정보제공

-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를 알고 있으면,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요새 계속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 고민 털어 놓을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봐’와 같이 물을 수 있다.
-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상의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원하는 바가 불분명하면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가해행위자와의 소통 및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돕기

- 피해자가 요청하면 교내외 조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도울 수 있다.
- 피해자나 가해행위자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도록 한다. 사건을 피해자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거나 가해행위자와 직접 대화 및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피해자 의사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이야기가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메시지 전달 역할을 요청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1회에 한하여 짧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때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 주장은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사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 사건 처리과정 동안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필요시 이동 및 귀가에 동행해주는 것을 고려한다.

라) 학과 교수

- 수업 중 조별 수업에서 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 변경이 여의치 않을 시 수업전이나 후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동시에 접촉금지 및 사건 대응을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안내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절차에 대한 설명 제공 및 피해자 욕구 파악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자에게 사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가해행위자가 접촉을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것을 알려주고,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내 신고와 징계 자료가 경찰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 피해자가 상호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를 원하는지, 가해자에 대해 징계 요청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 상담 및 사건처리

-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다.
- 피해자의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 신고인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과의 조정을 통한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중재 절차를 따르면 징계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재절차의 합의 및 중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행위에 따른 교내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공식 조사절차를 선택한 경우 ①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②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신고인 징계를 요구하거나 권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③ 징계위원회에서 피신고인 징계를 결정한다. 학생의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가해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요청

- 가해행위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및 연락 금지를 요청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중 징계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접촉 및 연락 금지는 통신, 물리적 접근 모두를 포함한다.
-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간 사안에 대하여 강제로 접근 금지시킬 권한은 없다. 다만 가해자에게 접촉 및 연락 금지를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어겼다면 가중 징계 요인으로 고려된다.

○ 사건조사 진행 및 피해자 지원

-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다.
- 피해자의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추가 상담을 제공한다.
- 스토킹 사건은 여타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신고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센터와의 상담 내용이나 기록이 경찰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바. 데이트 성폭력

1) 사례

(사례1) A와 B는 같은 과 커플이다. 연애 경험이 없는 신입생 A는 선배 B를 좋아하지만 스킨십이 부담스럽다. B가 A에게 키스를 하려 할 때 거부하고 자신은 손을 잡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키스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휴일에 B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영화도 보고 음식도 해먹고 놀자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다. B의 자취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B가 갑자기 A에게 키스를 하려 했다. A는 놀라서 몸을 뺐고 B를 밀어냈다. B는 화를 내면서 “네가 연애를 안해봐서 그러는데 연애하면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키스나 성관계도 해야 하는 거야.”라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A는 멍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B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집에 돌아온 A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여자 친구임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B에게 화도 났다. 고민하다 친한 학과 여자선배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례2) A는 B와 연애를 한지 1년 가까이 되었다. 최근 B의 자취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놀던 차에 B의 컴퓨터에서 A가 계정 로그인을 했고 로그아웃이 안 된 상태에서 B가 A의 계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B는 A의 이동 경로를 이 계정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B는 A에게 ‘너는 믿어도 세상은 못 믿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라며 귀가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B는 A가 언제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알기 원했다. A는 B가 자신의 귀가 시간과 동선을 통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B의 통제로 다툼이 생겨 둘은 헤어진다. 그러나 B는 A와 같은 전공이어서 조별 소모임 활동을 함께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B는 A가 화장실을 가거나 집에 가려 할 때 뒤에서 쫓아오곤 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A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뒤에서 쫓아오거나 쳐다보곤 했다. B는 A에게 문자를 해서, A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는지 계속 보고하라고까지 했다.

이처럼 B의 감시와 통제 행동은 이별 이후에도 계속되어 새벽에도 문자와 카톡으로 연락을 해오고, 화내는 일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는 죽고 싶은 맘이 들었고, 식욕도 없어졌고, 친구들과 학교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친한 선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선배의 권유로 함께 학교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A는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통제당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것이 폭력이고 스토킹임을 알게 되었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겪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이나 학교 성폭력 처리 기관 등을 통해 탐색해본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건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한다.
- 정보가 부족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면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워 결정하기 어렵다면 심리상담을 먼저 받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다.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둔다.
-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가 학내 구성원이므로 학내 징계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가 아닌 가해 행위 중단과 이후 2차 피해 중단만을 원한다면 중재를 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공식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해결을 원하는지 탐색한다.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 해바라기센터 등 병원에 방문하여 증거채취

-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 센터 등 성폭행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증거 확보를 위

해 피해 직후 샤워를 하지 않는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통제 및 스토킹이 폭력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지시키기

- 상대방의 감시와 통제는 폭력행위라는 점을 자각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몰래 쫓아오고, 훑쳐보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행동이 스토킹 범죄라고 말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가해행위자에게 전달한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대처

- 타인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계정에 몰래 들어가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나 선배 등 대리인으로 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 가해행위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이렇게 알렸음을 이메일, 문자, 카톡, 통화 기록 등의 증거로 보관한다.
- 타인의 컴퓨터 계정과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가해행위자에게 알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 가해행위자가 피해자 사생활을 비난하며 유포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

지인에게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비밀보장 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교수 및 학교 측에 도움 요청

- 학교 상담기구나 신뢰하는 교수를 통해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나 소모임 활동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해행동을 했기에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건해결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모르거나 결정하기 힘들 때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 전담 기관에서 상담을 한다.
- 학교의 처리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수업이나 소모임활동, 지인들에게 가해행위자가 ‘피해자 책임’ 운운하지 않도록 교수와 친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처리 중이라는 것을 알린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인지 및 치유

-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변화에 주목하고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심리상담 센터,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불면, 식욕 없음, 소화불량, 가슴 통증, 이유모를 눈물,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감, 절망감 등의 신체적·감정적 변화에 주의한다.
- 사건과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몸 상태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와 의료지원 등을 학교에 요청한다.

○ 사건내용에 대한 정리 및 증거수집

-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진술, 정리해본다.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원한 것이었는지, 원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정리한다.

나) 가해행위자

○ 피해자 의사 존중

- 피해자가 당분간 연락과 접촉 금지를 요청했을 때 이를 존중하고 지킨다.
-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데이트폭력의 개념이나 유형,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징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상담 요청 및 협조

- 신뢰관계인에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비밀유지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은 후 상담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교내 기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협조한다.

○ 2차 가해 행위 금지

-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동의해서 이러한 ‘폭력’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 대한 헐담이나 비난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2차 가해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해행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신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소문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 철회

한다. 사이트나 단독방 등에도 올린 내용이 있다면 즉각 삭제하고 철회 의사를 표명한다.

○ 폭력행사에 대한 범죄인식 필요

- 데이트성폭력은 연인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말하는데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성폭력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도 연인간의 폭력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폭력범죄를 행사한 것이다.
- 甲남과 乙녀는 서로 연인 사이인데 데이트 도중 甲남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乙녀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甲남은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乙녀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는 않았던 사건에서 강간죄를 인정하여 甲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11. 2006노711 판결)
- 연인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269 판결 강간치상)

다) 친구 및 선후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 사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행위자가 소문을 유포하지 않도록 조언한다.
- 사건 당사자 양측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는다.

○ 피해자 지지 및 관련 정보 제공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한다.

- 누구도 개인 평판이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공유한다.
- 대리인이나 지지모임 등을 만들어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조력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피해자의 어려움과 욕구에 대해서 가해자, 학과 교수,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전달하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건강, 일상생활, 학업에 불편함이 없는지와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묻고, 직접 도울 수 없는 것은 교내 심리상담소, 정신과,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준다.
- 사건과 해결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말해도 괜찮은지 먼저 묻는다.

라) 학과 교수

○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과 지지

- 피해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준다.
-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들은 것이 아니면 사건을 알려준 학생을 통해 피해자 건강상태, 학교생활의 애로사항,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법을 파악한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건해결을 한다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필요 시 교수에게 사건 상담을 하도록 한다.

○ 학과 차원의 예방교육 등 실시

- 피해자가 주위로부터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학과 학생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의 특성, 피해, 후유증,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 2차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나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및 조사협조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같은 수업이나 소모임, 공간에 있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어려움과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가해행위자를 분리시킨다. 대체 수업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결처리가 필요한지, 가해자를 출석 중단시킬지 등에 대해서 피해자나 대리인과 논의하여 지원한다.
- 피해자가 원하는 바와 학업에서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한다. 피해자가 직접 면담을 기피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 요구와 조력 방안을 논의 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수업 원거리 자리 배치,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모임 변경, 공결 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등록한 수업 담당 교수들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하고, 피해자 신변보장과 비밀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당 수업에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과 의논하며 사건 해결에 노력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사건처리 절차 안내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사생활 보호나 2차 피해 방지조치 요구 등 피해자 권리를 안내한다. 사건 처리 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명으로 기록을 남기고 처리할 수 있음을 알린다.
- 상담 및 사건처리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사건처리 지원 동의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안내한다.

○ 피해자 심리 치유 및 관련 서비스 안내

- 피해자가 교내외 상담기관의 도움으로 피해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여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필요 시 의료, 상담, 법률 지원 등도 일정 규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다.
- 지지모임 등에 대해 내용적 재정적 지원, 조력한다.

사. 외국인학생 성희롱·성폭력

1) 사례

B는 캠퍼스를 걷어가는 외국인 유학생 A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전화번호를 물었고, A와 B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이틀 후, B는 A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당일 오후 B, B의 친구, A, A의 친구(D) 넷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 노래방에서 놀다가 B는 A에게 둘이서만 나가서 술 한 잔을 더하자고 제안했고, A와 B는 각자의 친구들과 헤어지고 둘이서 노래방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A는 자정을 넘어 기숙사에 들어가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B에게 말했고, B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쉬다가 A를 이른 아침에 기숙사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둘은 술을 좀 더 사서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서로의 동의하에 키스와 스킨십을 했다. B는 A와 성관계를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A는 거절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B는 A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술에 많이 취한 둘은 잠이 들었고, 그 날 아침 B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A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

다음 날 아침 A는 겁이 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자신보다 한국인인 가해자 말을 더 믿을 것 같아 가해자에

게 전달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주말에 할 일 등 일상 얘기를 했다. 오후에 A는 친구 D와 함께 병원에서 상처부위를 사진촬영 했고, 약을 처방받았다. D는 피해사실을 학교 내 외국인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대외교류과에 연락하자고 A에게 제안했고, A는 고민 끝에 대외교류과를 찾아가서 직원 C에게 병원기록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C는 A에게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라는 제안을 했으나, 3개월 뒤 귀국 예정이었던 A는 고민이 되었다. A는 한국에서 4년 6개월 이상 거주한 한국유학생으로 3개월 뒤 졸업을 앞둔 외국인이기 에 제대로 된 학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C에게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만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자신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이나 학교 성폭력 고충 처리 기관과 상의한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한다.
- 정보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심리적 혼란으로 결정이 어려우면 전문적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시간 여유를 두고 결정할 수도 있다.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에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가해 행위자가 학내 구성원이므로 학내 징계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가 아닌 가해 행위 중단과 이후 2차 피해 중단만을 원한다면 중재를 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공식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 주변이나 교내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

-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거나, 외국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대외교류센터와 같은 교내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 센터 등 성폭행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및 범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친구나 대외교류본부 직원이 병원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가해행위자의 연락이나 접촉 시도를 거절하고,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조치를 요청한다.
- 어떤 사건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하고 사건해결에 필요한 사항과 가해자 측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전달한다.
- 2년 혹은 4년 단위 외국인 교환학생은 피해를 당해도 귀국하면 사건을 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은 대학 측이 한국학생 편에 설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다. 대학 측이 가해행위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지원에 힘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다.

○ 가해행위자 차단 및 심리적 후유증 치유

- 가해자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관한다.
- 사건 후 자신의 몸상태, 감정·정서상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교내외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한다.

나) 가해행위자

○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범죄행위일 수 있음을 인지

- 「형법」상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형법」 제299조)하는 것을 규율한다. 술, 약물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식이 흐린 상황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 준강제추행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동의하지 않은 성적접촉과 성관계는 상대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형사범죄임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다.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가 수용하면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 피해자 의사 존중, 2차 가해 금지, 조사에 협조

- 피해자가 연락 중단을 요청하면 전적으로 수용한다.
- 학교 측이 공간분리를 요청하면,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문제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절대 삼가야 한다.

-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인에게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사도하거나 피해자 신상을 누설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 주위의 비난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학내 학생상담기관이나 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 도움을 요청한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피해자 의사 존중,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가 피해와 관련하여 상의하면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사건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피해자가 가해 행위자와의 공간분리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으로 안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한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라) 학과 교수

○ 피해자 의사 존중,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학과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 교수 개인이나 학과 차원에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등 교내외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피해자를 돕는다.

-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마) 대외교류과

○ 피해자에게 정보와 지지 제공

- 통역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여 피해자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피해자에게 사건해결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주체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할 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에 대한 서약을 받는다.
-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연계할 때, 이곳을 꺼리는 학생에게 모든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건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한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교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내 지원체계 홍보

- 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외교류 본부 홈페이지, 외국인 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 학교 영어신문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처리 절차 및 지원체계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다. 이를 통해 신고를 망설이는 외국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로 교내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사건처리 절차 안내 및 피해자 욕구 파악

-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센터 방침과 기준, 사건 조사심의 및 징계절차에 대한 안내, 학교규정,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에 대해 안내한다.
- 피해자로부터 사건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파악한다.
- 협조가 필요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신원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시행 및 사건조사 진행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 필요하면 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한다.
- 사건 처리가 최종 종결된 후 모니터링,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위자 교육프로그램 진행, 피해자 심리적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피해자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학 측에 통역지원을 요청하고 병동반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함께 동석하도록 한다.
- 사건이 중재로 종료되면 가해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후 작성한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준다.
- 피해자의 귀국 후에도, 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후상담을 진행한다.

○ 예방교육 실시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서비스 홍보

- 피해자가 떠난 후, 인권센터는 사건당사자(피해자/가해자)가 속한 학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사건의 재발방지, 공동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인 여학생에 대해 잘못된 성적 고정관념을 있는지 성찰하도록 하고 이를 교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최대한 다양한 언어버전으로 만들어 유학생들의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외국인 학생 피해자를 위한 통역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2. 교수-학생 간 사건

□ 매뉴얼 작성 개요

교수-학생 간 사건 또한 학생-학생 간 사건과 방식과 형태의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모든 사건이 위력에 의해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학생-학생 간 사건의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시장 진입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대학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는 경쟁사회에서 본인의 스펙을 보장하는 학점을 주는 당사자이자, 취업 및 진학에 필요한 추천서의 작성자일 뿐 아니라, 직업세계에서 본인이 평판을 좌우하는 평가자이다.

이처럼 학생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갖는 교수의 영향력과 권위를 고려할 때, 교수-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대응 수위와 적극성은 현저하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생 간 사건에서는 교수의 권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 외 추가피해의 발굴과 공동의 대응 등 방식 또한 피해자의 사건 해결의지를 독려하고,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교수-학생 간 사건으로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는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교수-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나머지 세 가지 사례는 각각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폭력, 논문지도/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폭력,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으로 성희롱·성폭력의 유형은 성희롱, 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일관될 수 있으나, 상황의 맥락적 차이와 대응을 기술하고 있다.

가.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1) 사례

(사례1) A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 교양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 첫 날 교수님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켜야할 몇 가지 규칙들을 안내해 주셨다. 교수님이 마지막 규칙을 이야기할 때 A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꼈다. 교수님은 '여기 대학 다니면서 CC 한 번 못하는 바보 있어요? 우리 수업은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활동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톱툰이 수강생 중에 맘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힘들면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찾아와요' 라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일제히 크게 웃었고 어떤 남학생들은 웃으며 큰소리로 대답하기도 했다. 교수님은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 마다 '학생들의 연애' 이야기를 하셨다. 한번은 수업 중에 진해 군항제 이야기가 나오자, 한 여학생을 가리키며, '가봤냐'고 물어보고는 '남자친구랑 자러 간 거냐, 벚꽃을 보러 간 거냐'고 물으면서 '커플이 돼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미리 말해주면 수업에 안 와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학생의 외모와 몸매에 대한 품평도 서슴없었다.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짧은 옷을 입는 날에는 '네 몸매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네'라고 말하거나, '다리가 늘씬한 게 시원해서 보기 좋네'라고 하고,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어느 여학생에게는 '남자친구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각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는 교수님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확신했지만, '내가 문제제기했을 때 성적을 나쁘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례2) 00학과의 전공 필수 수업은 수강생과 교수님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수업 분위기가 밝고 화기애애하다. 어느 날 교수님은 '오늘은 조교가 없으니 B가 커피를 사와라'라고 말씀하셨다. B가 교수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드리자 교수님은 'B가 사다주는 커피가 더 맛있네'라고 말씀하셨다. B는 처음 듣는 교수님의 표현에 당황했지만 고맙다는 인사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은 B에게 'B가 심부름을 잘 하네. 앞으로 내 커피는 네가 사다줘'라고 말씀하셨다. B는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기

분이 들었다. 이를 뒤 수업 시간에 B는 교수님의 부탁으로 다시 커피를 사다드렸다. 교수님은 수업이 끝난 후 B를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이상하게 듣지 마라. 네가 심부름 잘해서 진짜 예쁘다'라고 말씀하셨다. B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고학번 선배에게 교수님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B가 선배에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발언을 못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조교는 B에게 '앞으로 심부름은 내가 다 할게. 네가 다시 그런 말 안 듣게 하면 되잖아'라고 말했다. B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교수님 수업을 듣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례3) 인간의 신체 발달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다. 교수님은 인간의 성을 주제로 강의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남자들은 틈만 나면 새로운 짝을 찾게 되어있다. 성 폭력도 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 수업을 듣던 몇몇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교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편견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자 교수님은 '과학적인 설명이므로 내 말이 틀렸다는 사람은 내 앞에서 논증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수업 내용을 다른 주제로 바꾸려고 하셨지만 학생들은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계속 항의를 했다. 수업시간이 끝난 후 교수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며 '수업 내용에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것 같다. 내 수업을 듣기 싫은 사람은 다음 시간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간 후 서너 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에 남아 교수님의 발언을 신고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수업시간에 겪은 교수의 언어적 성희롱 상황에 대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논의하거나 학교 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한다.

교수의 일대일 성희롱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 확보

- 교수님의 발언 중 본인이 불쾌감을 느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교수님의 발언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은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성희롱으로 인지했다면 그 맥락을 잘 서술하여 기록한다.

○ 문제 제기

- 문제 발언을 들은 즉시 수업시간 또는 수업 종료 후 교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성적 불이익 등이 걱정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 학내 공식적 기구에 의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먼저,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신고를 하고,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 진술 등의 절차를 마친다.
- 학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학생회 등을 통해 학내 이슈로 공론화할 수도 있다.

나) 가해행위자

○ 사건 예방

- 선한 의도의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업과 무관한 성(性) 관련 언행은 수강생의 입장에서 심각한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성차별적, 성폭력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발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수강생들을 성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삼가야한다. 수강생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개인의 외모 평가, 연애편계 등 지나치게 사적인 발언은 자제하도록 한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의 입장을 경청한다. 본인 발언의 의도를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학생이 불쾌감을 느낀 사유에 집중하여 상황을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인지되었을 시 사과한다.

○ 재발방지

- 강의 내용은 교수의 권한 영역이지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방향에 위반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성차별 등 인권침해 관련이의 제기를 받는다면, 단 한 명의 이의제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수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심리·정서적 지지

- 동일한 수업을 듣는 학우에게 수업 내용을 성희롱으로 인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학우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내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은 성희롱으로 인지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사건해결을 위한 안내

- 조교로서 수업 중 언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면담하는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더라도 학내 성평등상담소나 학과 교수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한다.

○ 학내 공론화

-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대자보 등을 통해 교내 이슈로 공론화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하게 학생 성폭력에 대한 캠페인과 다양한 사례 수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학과(수업 운영 부서)

○ 사건예방

- 수업시간에 수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성적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학과, 단과대, 학교 차원에서 안내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학생 상담

- 학교교수 또는 동료 교수의 수업 내 문제 발언을 인지했다면, 상담해온 학생에게 개입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사건조사기관인 상담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동료 교수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는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 조치사항

-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교수의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되, 무리하게 양자 간에 합의를 이끌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내 근거규정이 정하는 범위에 한해 가해 교수와

의 공간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과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한다.

- 가해행위자가 피해 학생의 개인적인 평판 또는 해당과목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학과 안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 재발방지

- 가해교수의 수강생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외에도 학과 내 비슷한 다른 사례들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한다.
- 학과 교수들의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조치사항

-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비공개 상태에서 가해자의 사과만을 원할 수도 있고, 비공개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학과에 전달하거나, 경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인지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조사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등으로 사건조사나 징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만약, 피해자가 비공개 처리를 원할 경우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여 상담원이 직접 가해행위자를 만나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하도록 중재한다.

○ 사건예방

- 학내에서 발생하는 수업 중 성희롱 사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중 언어 성희롱을 예방하는 다양한 안내 조치들을 실시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브로셔를 만들어 배포할 수도 있고, 교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배포할 수도 있다. 학교별 의사소통 구조와 환경 등을 반영하여 가장 접근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한다.

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1) 사례

(사례1) 석사과정생인 C의 지도교수님은 주 1회 이상 연구실 학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 일부 대학원생 선배들은 교수님의 회식 문화를 좋아해서 연구실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석사 1학기에 재학 중인 C는 연구실에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수님이 주도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2차 회식에 따라갔던 자리에서 C는 평소 볼 수 없던 지도교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다. 교수님은 박사과정 여학생들과 러브샷을 하며 술을 마셨고, 석사과정 여학생들에게 기대거나 팔짱을 끼기도 하셨다. 교수님은 수업과 프로젝트 운영을 동시에 하느라 매우 힘들다며 학생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C는 교수님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안타까웠지만 여학생들과의 스킨십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C는 교수님이 동기 여학우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마다 본인이 먼저 교수님의 손을 잡는 식으로 교수님을 제지했다. 회식이 끝나고 교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 선배들은 C를 향해 ‘오늘 수고했다’고 이야기했다. C는 복잡한 마음에 다음 날 학과장님을 찾아가서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학과장은 C에게 ‘요즘 000교수가 많이 힘들다. 네가 원한다면 연구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C는 연구실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학원 생활에서 연구실 사람들과 지도교수님을 계속 볼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다.

(사례2)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D는 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

다. 대학원생들의 분과별 세미나 진행을 도우며 본교와 타교의 대학원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학교의 도우미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회식을 마친 교수님 몇 분이 호프집으로 찾아왔다. D는 막차가 끊기기 전에 돌아가기 위하여 교수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호프집을 나왔다. 이때 평소 잘 모르던 A교수님이 D를 쫓아왔다. 교수님은 D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말하며 D의 손목을 잡고 다시 호프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D는 막차를 타야한다며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했고 교수님은 ‘내가 싫으냐’며 D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D는 그 자리를 겨우 빠져나왔고, 며칠 뒤 A교수님에게서 ‘그 날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 내 연구실로 와라’ 라는 문자를 받았다. D는 A교수님을 찾아가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너가 착하고 괜찮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졸업하면 내 밑으로 와라. 교수가 될 때까지 너를 키워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D는 교수님에게 자신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 날 교수님은 D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하셨고 D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식사가 끝난 후 D는 교수님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자리에서 교수님은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며 D의 손을 잡으셨다. D는 교수님의 행동에 당황하였으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순간 며칠 전 학술대회 뒤풀이에서 교수님이 자신의 손목을 잡으며 ‘내가 싫으냐’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고, 교수님이 자신을 제자로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집안일을 핑계로 술자리를 빠져나왔다. D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오늘 일을 상담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과 단둘이 술자리를 한 것이 알려지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학교의 공식행사 이후 이어지는 뒤풀이 자리에서 겪은 교수의 성추행 상황에 대해 학교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한다. 주위 사람

의 지원을 통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한다.

- 또한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 확보

- 불쾌감을 느낀 피신고인의 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정리한다. 기록지는 되도록 육하원칙의 내용이 충족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망각의 효과를 받지 않도록 사건 종료 즉시 최대한 빨리 기록을 남긴다.

○ 신뢰관계인과의 조력 및 문제제기

- 먼저는 가까운 지인이나 선후배 동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한 문제해결이 원활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시에 여러 명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피해자를 돕지 않는 경우에는 학내 성평등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조치사항

-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행위자를 일대일로 만나지 않는다. 만남이 불가피하다면, 되도록 2명 이상 만나도록 한다.

나) 가해행위자

○ 사건예방

-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목적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교수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교육적인 처신으로 해석되므로 주의한다.

- 교수와 학생들 간에 다년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갑’의 위치의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생들과 친분에 의해 술자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갑을 관계에 의한 비자발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억한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학생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고 학생의 입장을 경청한다.

○ 대응 시 주의사항

- 음주 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해행위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사건 축소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성범죄행위 인지

- 교수의 제자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처해진다. 교수의 제자 성폭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03조 제1항).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인 교수가 대학교에서 레슨을 받으러 온 피해자(여, 18세)에게 “술은 마실 좋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례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고단95판결, 대구지

방법원 2014.1.16. 선고 2013고단6624 판결).

다) 친구 및 선후배

○ 사건 발생 시 대응

- 술자리에서 교수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가해 행위자 또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즉각 가해를 중단시킨다. 이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조력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 신고 시 주의사항

-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제3자에게도 신고의 권한이 있음을 인지한다. 이때,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제3자는 신고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일대일로 만난 술자리에 대한 제3자의 의심이나 추측성 발언 및 이를 퍼트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라) 학과

○ 사건 인지

- 교수가 참석하는 수업 뒤풀이 또는 학과(연구실) 단체회식 자리는 학생의 학업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모임이다. 따라서 목격자, 동료 또는 학생회 등은 이러한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교수의 사적인 실수에 그치지 않는 문제임을 인지한다.

○ 조치사항

- 피해자나 제3자의 제보를 받았을 때, 피해자의 문제제기 의향을 확인하고, 관련 센터 등을 연계한다. 자세한 조사 없이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종결을 짓지 않도록 하고, 조치과정에서도 한 쪽만의 행위를 두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차 피해 방지

- 학과 내에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논의하도록 한다.
-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해행위자와 공간적 분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가해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공간분리의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대책 마련

-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맡기되, 학과 학생, 또는 해당 교수의 수강생 및 전공생 사이에서 유사사건이 있는지 학과의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 외에도 학과 내 잘못된 음주 문화 근절을 위한 불필요한 회식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관련 주의사항을 매뉴얼화 하여 교수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주의사항

- 음주를 사유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수-학생 관계의 사건은 명백한 권력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 미성년자 신고의무

- 19세 미만(연나이) 학생에 대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즉시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증거확보

- 피해자 외에도 제3자등과의 상담 및 진술서 등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다. 피해자와 가해행위자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CCTV 등 관련 기록들을 모두 확인한다. (※이와 같은 조사는 음주 후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에 해당한다.)

○ 피해자 조치사항

-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 후 정신을 잃었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하고 약물 이용 범죄 또는 촬영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찰 신고를 권유한다.

○ 가해자 조치사항

- 피해자가 가해 교수와의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업배제 등 공간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가해행위자에게 알린다.
- 가해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피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행할 경우 징계처분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가해행위자에게 알린다.

○ 문제제기

- 다수의 인원이 목격한 사건에서 공동체 내 배제 등을 두려워하며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 피해자가 많아서 진술을 두려워하거나, 가해행위자의 권위적인 태도로 진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 파악된 결과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신고의무

- 피해가 19세 미만(연나이)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및 해당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순간, 수사기관(경찰)에 즉각 신고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학제 상, 대학교 1~2학년생의 상당수가 이 연령에 해당됨을 유념한다.
- 만약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담원이 자체적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경찰과 상담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 논문지도/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1) 사례

(사례1) 체육계열 전공자 E는 전공 수업을 들을 때마다 A교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교수님은 E를 지도하면서 E의 운동 자세가 나쁘다며 종종 화를 내셨다. 그럴 때마다 E는 과 학생들 앞에서 자주 혼나는 것이 몹시 창피했다. 어느 날 E는 A교수님에게 '개인 지도를 해줄 테니 주말에 집으로 와라'는 연락을 받고 교수님의 집으로 찾아갔다. 교수님은 E의 동작을 봐주시며 E가 개선해야 할 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교수님은 E에게 '남자친구가 있나? 남자친구에게 자주 근육마사지를 받아라'고 말했고 E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수님은 '나도 마사지 잘 한다'고 하시며 E의 다리를 주무르셨다. E는 교수님의 손을 피하고 싶었지만 '수업시간에 하던 건데 왜 그러냐'는 교수님의 말씀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은 자세 교정을 해준다고 E의 다리와 허리, 어깨 등을 만지기도 했다. E는 교수님의 행동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교정을 받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교수님은 '오늘 집에 아무도 없다. 더 있다 가라'고 하셨고 E는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해도 괜찮은지 고민이 되어 평소 같이 훈련하던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배에게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는 답장을 받은 E는 바로 교수님의 집을 나섰다. 다음 날 E는 선배를 만났고 선배에게 '그 교수님 소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배는 E에게 '다

시 교수님에게 연락 와도 가지 말아라. 신고하고 싶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E는 본인이 겪은 일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교수님은 전직 유명 운동선수였기에 신고하면 파장이 매우 클 것 같았다. 교수님은 그 날 이후 더이상 E를 수업시간에 혼내지 않으셨고 가끔씩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뭐하니'라는 문자를 보내셨다. E는 선배의 말대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운동계에 소문이 날까 두려운 마음이 커져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E는 교수님에게 '이번 주에 집으로 꼭 와라. 개인지도 안 받으면 기말 평가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사례2) F는 논문 심사를 앞두고 전체 대학원생들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갔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졸업 예정자들은 학생들과 교수진 앞에서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워크숍 일정이 밤늦게 끝났고 F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숙소로 돌아갔다. F가 잠들려고 할 때 지도교수님이 F에게 전화를 걸었고 '논문 이야기를 해야 하니 내 숙소로 와라'라고 하셨다. F가 '내일 아침에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은 지금 바로 본인의 방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F가 계속 거절하자 교수님은 '그럼 내가 네 방으로 가겠다'고 하셨고, 당황한 F는 발표했던 논문자료를 꺼내놓고 교수님을 기다렸다. F의 방으로 온 교수님은 본인의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며, F에게 안아달라고 했다. F는 교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교수님은 F를 끌어안으며 '이 방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말했다. 당황한 F가 '논문 이야기하러 오신 것 아니었냐'고 하니 교수님은 '논문도 나랑 친해져야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F는 자신을 성추행하는 교수님을 피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지만 다른 원생들이 이 상황을 알게되는 것이 두려워 큰 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교수님은 자신을 피하는 F에게 직접적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었고, F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본인의 숙소로 돌아갔다. F는 이날 일을 생각하면 다시 지도교수님을 뵙고 싶지 않았지만, 교수님에게 원망을 사거나 졸업하지 못하면 몇 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몇 달 뒤 F는 졸업을 했지만, 이 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취직한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F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용기를 내어 교수님에게 전화했고 '논문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님은 '미안하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F는 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F는 교수님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학교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가)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논문지도나 레슨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의 성추행 상황에 대해 학교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한다. 주위 사람의 지원을 통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한다.
- 또한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확보

- 교수님과 단둘이 만나게 된 경위를 포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주고 받은 대화, 행동 등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만약 녹음이 가능하다면 이를 증거로 남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녹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도청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한다.

○ 조치사항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한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신고, 조사, 징계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모든 처리는 피해자의 의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개나 사건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빠르게 상담을 받도록 한다.

○ 가해자에 대한 대응

- 가해행위자가 만남을 원하는 경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거절하고, 논문 지도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거나 학우와 동행한다. 의사소통 과정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되도록 통화보다는 문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통화의 경우에도 증거를 남기도록 한다.

○ 참고사항

- 가해행위자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졸업생 또는 타대생도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 등 교원의 비위를 다루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나) 가해행위자

○ 사건예방

-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목적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교수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교육적인 처신으로 해석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교수와 학생들 간에 다년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 논문 심사,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간의 만남을 이러한 권력관계에 근거한 비자발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피해자에게 사과 요청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설명한 잘못에 대하여 솔직하게 사과한다.

○ 성범죄행위 인지

- 수업, 개인지도, 논문지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교원의 권한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별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된다.

- 가해행위자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안이므로 학교의 조치에 따라 조사 및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

○ 2차 피해 방지

- 사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의 학업이나 개인 평판 등에 교수로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 2차 가해 또는 교원 품위 위반이 될 수 있다.

○ 주의사항

- 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되, 변명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수강생들이나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별도의 비위 행위로 심의 대상 및 징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2차 피해 예방

- 피해자의 2차 피해에 유의하고 사건에 대하여 무분별한 추측성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전공생 관련 주의사항

- 가해행위자가 학교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전공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자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며 허위 증언 또는 피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라) 학과

○ 피해학생 조치사항

- 지도교수와 전공생 간의 사건은 학생의 진로와 직결된 사건이므로 학과의 매우 세밀한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사건이 학생의 졸업과 진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생의 의향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도록 한다.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 교수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가해 교수와의 공간분리나 지도교수 변경 등을 지원한다.

○ 전공생 조치사항

- 만약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해당 교수의 다른 전공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때 조치사항들은 학과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전공학생들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조치사항

- 체육계열 전공자의 개인지도나 논문심사를 앞 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건들이다. 신고인이 원하거나 염려하는 바를 세밀하게 점검하며,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학과와 긴밀하게 조율한다.
- 피해자가 가해 교수와의 공간분리를 원하는 경우 교수의 수업배제나 지도교수 변경 등을 학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가능하도록 한다.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이메일,

문자, 모바일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피신고인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안내한다.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처리 대응을 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비밀유지와 보호에 유의하도록 한다.
- 대상별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며,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도 및 대응력을 높이도록 한다.

라.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

1) 사례

(사례1) A는 졸업이 가까워지고 취업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압박감과 불안감이 심해져 지도교수님의 상담을 요청하였다. 스펙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던 A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에서 “일단 살부터 빼야하지 않겠어? 요즘은 다 서비스직이야. 스펙도 스펙이지만 사람들은 일단 겉모습을 보고 호불호가 갈린다고. 일단 여자는 예쁘고 친절하고 잘 웃어야해. 면접 때도 그런 걸 본다고.”, “남자는 특정 능력이 뛰어나면 되지만 여자는 아름다운 미모가 스펙이 될 수 있어. 더 나이 들기 전에 젊고 탱탱할 때 서둘러 취업하는 게 좋아. 어차피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하잖아, 지금 남친 있지?”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감이 심했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님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고,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했고, A는 더 이상 지도교수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사례2) 이공계열 전공생인 B의 지도교수는 1주일에 많으면 서너번씩 제자들과 술자리를 벌였고,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잦았다. 교수와의 술자리가 랩실 내에서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B는 졸업을 앞두고 지도교수로부터 졸업을 시키기 어렵다는 통보를 들었다. B는 여기저기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교수의 통보로 인해 취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중에 B의 지도교수는 어느 날 3차 술자리에서 B를 여자 접대부가 나오는 학교 근처의 유흥주점의 룸으로 데려갔다. 여자 종업원의 접대를 받던 교수는 "네 옆에는 남자를 앉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농담을 했고 종업원을 내보낸 뒤에는 B에게 좀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논문을 쓰라는 등 졸업을 시켜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였다. B가 폐쇄적인 공간에 둘만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졸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서러움에 울기 시작하자, 지도교수는 슬금슬금 B 옆으로 오더니, B의 손을 잡고는 '울긴 왜 울어 울지마' 라고 달래는 듯하다 '뽀뽀, 뽀뽀...'라며 B에게 뽀뽀를 강요하였다. 때마침 룸에 들어온 종업원 덕분에 B는 순간을 넘길 수 있었지만, 졸업 앞에 절대 약자인 본인에게 뽀뽀를 강요한 교수의 행동에는 분노를 느꼈다.

가)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교수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학교 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한다. 교수의 일대일 성희롱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확보

- 본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둔다. 기술은 되도록 육하원칙이 충족되도록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외에도, 사진, 동영상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둔다.

○ 조치사항

- 피해 사실을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알리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학내에서의 징계, 학내에서의 보호 조치 등이 병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양한 학내 조치와 관련 사항을 안내받기 위해서는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충분히 활용한다.

○ 가해행위자 대응

- 피해를 겪은 후 가해행위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삼가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사람을 대동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보도록 한다.

○ 요구사항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학과 등을 통해 가해행위자와 격리된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사건조사에서부터 일련의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가해행위자

○ 사건예방

-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목적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교수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교육적인 처신으로 해석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교수와 학생들 간에 다년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 논문 심사,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간의 만남은 이러한 권력 관계에 근거한 비자발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성범죄행위 인지

- 육체적 성희롱이 행해진 경우 신체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했다면 교원의 권한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나 미수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대학교수가 사제관계로 인하여 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명한 판례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고단95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3고단6624 판결).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성폭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다. 피해자의 요구 시에 사과하도록 한다.

○ 2차 피해 예방

- 졸업학기를 맞아 취업이나 진로에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학생의 향후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고, 특히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개인정보의 누설은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나 맥락,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 재발방지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차별적인 말을 점검하도록 한다. 성차별적인 발언 외에도 학생들의 외모, 의상, 몸에 관한 성적인 비유는 성희롱으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발언을 삼가도록 한다. 홀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화법, 교수법, 농담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친구 및 선후배

○ 협조사항

- 신고 후 사건처리과정 중 참고인,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거짓 없이 진술하도록 한다.

○ 2차 피해 예방

-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제3자는 타인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재발방지

- 학생회 차원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배포하는 등 학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건 제보 시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으로의 중간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

라) 학과

○ 조치사항

- 대학원생이나 예체능전공 등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교체하거나, 외부위원과의 논문진행, 심사위원단 재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졸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 가해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를 보장하고, 필요 시 가해행위자의 수업 중단이나 학생 지도를 제한시킬 수도 있다.

○ 재발방지

- 해당 교수의 수강생 및 지도학생 중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외에도 학과 내 상담 중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 학과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배포 등 학과 내 관련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마)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조치사항

-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건들이므로, 신고인이 원하는 바와 걱정하는 바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학과와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이메일, 문자, 모바일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피신고인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안내한다. 만약 스토킹 행위로 인지될 만큼 통제 불가능한 연락을 받고 있다면 일체 무응답할 것을 안내한다.

○ 미성년피해자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신고 대상이므로 경찰에 신고한다(「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행위 유형에 따라 형

사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담원이 자체적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경찰과 상담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 2차피해 방지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처리 대응을 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비밀유지와 보호에 유의하도록 한다.

○ 재발방지

- 대상별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의 마련 및 배포, 성희롱 고충상담 기관 홍보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도 및 대응력을 제고한다.

IV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1. 사건처리 매뉴얼
- 2. 2차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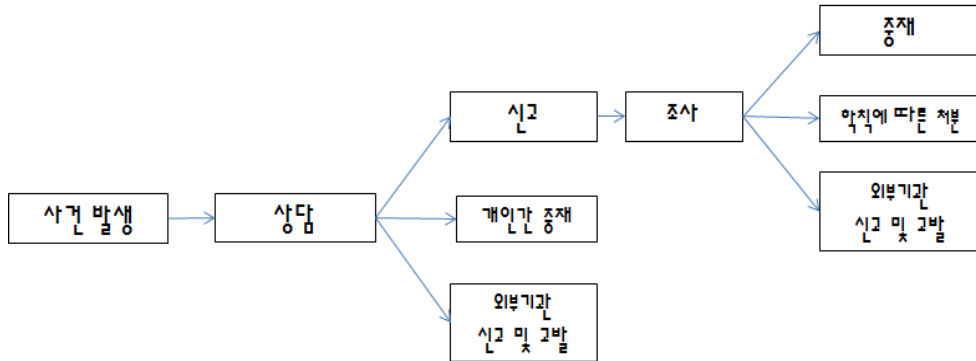
1. 사건처리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건의 피해자의 상담, 신고 이후 조사, 중재, 징계에 이르는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의 행동매뉴얼을 제시해 본다.

본 매뉴얼은 사건처리 각 단계에서 피해자, 가해행위자, 친구, 선후배 등의 제3자,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등이 사건처리에서 있어서의 행동기준과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앞 장의 상황별 매뉴얼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별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한데 비해 본 매뉴얼에서는 사건처리 단계별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가.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

사건발생 후 대부분 피해자는 현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주변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자신에 대한 분노 및 자책에 빠져들기 쉽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이며, 일반적으로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선배, 담임교수, 조교 등)이나 친구와 상의를 한 후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센터를 방문하기 전, 주변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주변인의 돕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했던 충고와 같은 말들이 때로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림 IV-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초기 사건처리 단계

○ 피해자

- 자책감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남겨둔다.
- 가해자와의 문자 내용, 통화 내용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시 사건 주변의 CCTV, 관련 사건에 대한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한다.
- 사건에 대한 증거나 증인 확보. 특히, 성폭행의 경우 당시의 옷, 속옷, 신발 등 모든 물건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

○ 가해행위자

- 사건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한다.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2차 피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 본인의 과오가 확인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책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을 위해 조력한다.
- 선의라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사건 발생 후 상담 전단계의 유의점

- 개인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몰래카메라나 SNS 혹은 단체채팅방과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의 신고 의지가 중요
- 이때에도 피해자의 신고 의향이 중요하므로 피해자 동의하에 신고
-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녹음이나 캡처와 같은 증거확보가 필요. 단,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것을 합부로 보거나 저장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음에 유의

나. 상담

상담은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이 반드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담이라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학내 절차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고, 행위자에게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과 사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다. 상담은 교내의 양성평등센터/인권센터/학생상담센터(학교별 명칭 상이)에서 진행되며, 상담뿐 아니라, 사건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 등 이후의 공식절차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상담방법은 직접면담도 가능하며,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 피해자

-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 혹은 기술한다(육하원칙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

- 증거나 증인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재 상황에 대해 진술한다(신체적/ 정신적 피해)
- 요구사항을 제시한다(사과/ 처벌/ 공간분리 등)
-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한다.
-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 및 믿을 수 있는 지인들과만 상의한다.

○ 가해행위자

- 사건에 대해 진술한다(육하원칙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
- 증거나 증인 여부를 확인한다.
- 사건 이후 본인이 취한 행동이나 그 후 상황을 확인한다.
 - 사건 진행 절차 확인
 -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밀유지 필요(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소수와 상담)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목격자의 경우, 사건에 대해 진술(육하원칙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 하되 증거나 증인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
- 친구나 선배의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와 분리되어 보호되는지, 피해자의 정서적, 신체적 상황 확인,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노력한다.
- 지도교수나 학생회의 경우,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한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론화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제3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화에 대한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3자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력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상담 전, 상담자를 소개하고, 기본 인적정보 파악과 동시에, 비밀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한다.
-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확한 상담내용 기록이 필요하므로 녹음이 필요함을 알리고 녹음 동의를 구한다.
-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황과 현재 행위자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사건해결절차에 관해 설명한다.
가령, 상담 후 신고, 개인 간 중재, 외부기관 신고 및 고발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아울러, 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해결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은 상담업무와 사건을 신고 받아 조사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상담과 조사업무의 담당자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

◇ 상담 시 유의점

1. 피해자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신고의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 현재 자신이 겪는 것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가 혼란스러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음. 그러므로 피해자의 페이스에 맞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과 사건접수 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미리 결론을 예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 삼가해야 함.

2. 가해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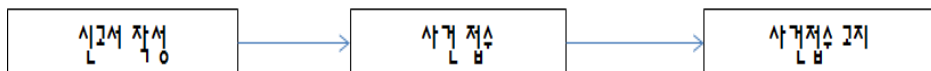
스스로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안과 분노가 높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담자의 정서적 지지가 행위자의 행동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행위자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공정한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제3자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를 충분히 공감해주는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가치판단을 하는 듯한 표현을 자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피해자의 요구사항이나 의문사항을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의견은 피해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조언함.

다. 사건 신고

사건 신고는 상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대학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학내 규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다. 쌍방이 학내구성원일 때만 사건 신고를 접수하는 학교도 있고, 피해자나 행위자 중 한 사람이 학내 구성원일 때 사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IV-2] 사건 신고 과정

○ 피해자

-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식(각 대학 규칙 참조)을 작성하며, 신고서 제출이후

내담자(피해자)는 신고인이 된다.

-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신청서와 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비밀유지서약 등이 포함된다.
- 신고 시 작성하는 진술서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사건 대응을 위해 증거나 증인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한다.
- 진술서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및 신체적 영향, 사건으로 인해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이나 불편감 등을 충분히 표현한다.
- 신고인측의 사건 신고서, 서면 진술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제출되면 신고한 것(신고일)으로 보는데, 이 신고일은 사건접수 후 조사, 심의까지의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한 경우 20일을 세는 기산점이 된다.

○ 가해행위자

- 주로 신고인에 의해 사건 접수 사실을 고지 받는다.
- 고지의 내용은 신고 내용(피해자가 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문제 제기한 내용)과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알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가해행위자 또한 심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의논을 할 수 있으나 사건 내용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2차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피신고인 고지 내용

- 사건 접수 일자 및 피신고인 이름
- 간략한 사건 내용
- 당사자가 서약해야 할 내용(비밀유지 서약, 사적 접촉 금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확인 등)
- 조사절차 설명 및 진술서 제출 요청 등
- 그 외 학교규정, 당사자 서약서, 진술서 양식 등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사건처리에 대한 피해자 의사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성희롱방지 의무에 따라 총장 및 심의위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해자의 협조가 없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 교수-학생간 사건의 경우 학과차원에서 교수의 직위해제를 통해 신고자와 행위자의 공간분리를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수-학생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과차원에서 교수를 즉시 직위해제하여 피해학생과의 공간분리를 함으로써 가해 교수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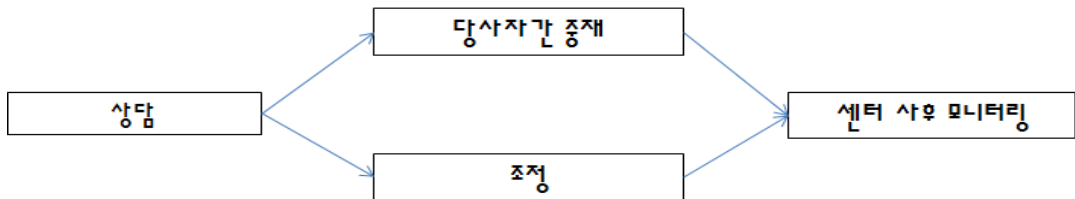
- 상담이 진행된 후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인의 의사를 항상 최우선시으로 해야 한다.
- 신고양식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접수신청서와 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때 신고인의 증거나 증인 관련 사항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출받도록 한다.
- 그 전에 상담이 진행되었던 경우라도 신고처리는 사건접수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기본서류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신고인이 피해자인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신고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비밀유지 및 필요시에는 심리상담 및 외부기관 연계도 가능함을 고지한다.
- 신고자와 행위자가 공간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피해자와 비신고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처리를 진행한다.
- 신고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조사를 거쳐 학교 심의위원회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외부기관에 신고 및 고발조치 할 수도 있고, 중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 신고 후 학교 규정이 정한 시일 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접수사실에 대해 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행위자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안내한다. 불성실한 태도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신고인이 신분을 밝히기를 꺼릴 때

신고 후 자신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무기명으로 사건을 신고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고 신고 시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작성하도록 독려한다(현재 상당수의 대학이 무기명 신고는 접수 받지 않고 있음).

라. 조정(중재)

피해자가 학교 심의위원회에 사건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고, 당사자 간 조정(중재)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조사과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IV-3] 조정(중재) 과정

○ 피해자

- 피해자는 센터를 통해서 혹은 개인 간 조정(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를 원한 이유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 단, 행위자와 둘 사이의 조정(중재)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피해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양상과 심각성, 대학 공동체의 안녕과 교육적 의미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사건처리를 결정한다.

○ 가해행위자

- 행위자의 조정(중재) 요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단, 규정이 없는 경우, 행위자의 조정(중재)요청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보다 행위자의 자발적이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교육 이수 등 행위자의 노력과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조정(중재)에 들어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한 주장이나 자신의 판단을 강조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공간분리 및 학습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과도 조정(중재)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한다. 조정(중재)는 원칙적으로 학생생활상담센터나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과차원에서 조정(중재)를 진행한다면 학과에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조정(중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조정(중재)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하고 피해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조정(중재)이 불가피하면 심의로 갈 수 있는 만큼 사건관련 서류의 보안을 철저히 한다.
- 조정(중재) 후 서약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행위자의 조정(중재)요청 의사가 강해 보이면 피해자는 학교의 문제해결의지가 없다거나 행위자편에서 사건을 중재하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늘 중립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마. 조사

조사는 상담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조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보통 20일 이내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는 대학에 따라 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 및 조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또 심의위원회가 조사기구의 기능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성폭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료적 지식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조사나 심의·의결단계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및 조력인이 동석할 수 있다. 신뢰관계인에는 친구, 선후배, 지도교수, 부모, 가족, 상담소 활동가 등이 포함되며, 조사나 심의과정에서 신고인 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 명시한 경우가 있으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학교는 의무적으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 상담에서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진술서를 제출한다. 성희롱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전체에 대한 맥락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후, 사건내용, 피해자의 행동과 느낌 등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목격자,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큰 경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신뢰관계인 및 조력인이 동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통역이 가능한 관계자가 함께 동석할 필요가 있다.

○ 가해행위자

- 가해행위자는 진술서 및 출석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절차 진행 및 조사 종결 후, 사건 내용과 관계자들의 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자들과 피해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과 관점만 주장하다 보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가해행위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소명하되 피해자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위를 소명해야 한다.
- 가해행위자는 사건 해결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및 보복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목격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진술해야 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다.
- 진술할 때는 개인적인 관점과 친밀함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상담 단계에서 상담원은 조사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체 처리 절차와 비밀보장 방침, 상황에 따라 어떤 정보 노출이 발생할 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조사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조사 시 피해자, 가해 행위자, 제3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추가 자료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술을 청취할 때는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는 것이 좋다.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 조사는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의 판단이나 생각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다.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 행위자에게 질문할 경우 질문 내용에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주의해야 하며 사건 내용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한다.
- 상담원, 조사 및 심의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피해자, 가해 행위자, 제3자 등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통합된 개요를 구성하여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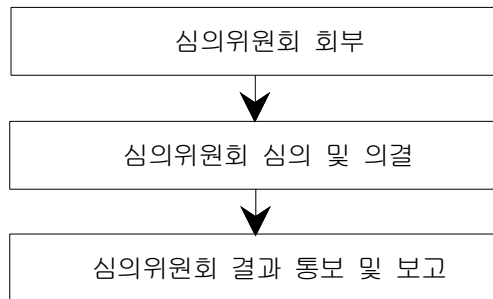
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피해자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바. 심의·의결

사건처리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사건의 행위자에 대한 각종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에서 출발하며,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교내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거나 사건이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나 집단적 문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성희롱·성폭력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행위자의 가해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그림 IV-4] 심의·의결 과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구성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좋다.

- 대학은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다양하다. 따라서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되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배석자로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심의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역할

- 심의위원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행위자, 제3자 등의 진술내용,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심의하며 피해자가 건강하게 대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보호조치를 논의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신고인이 2차 가해로 여기거나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삼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소집 안내시 위원들에게 유의사항을 적시하여 안내한다.

○ 성희롱 성립에 대한 심의원칙(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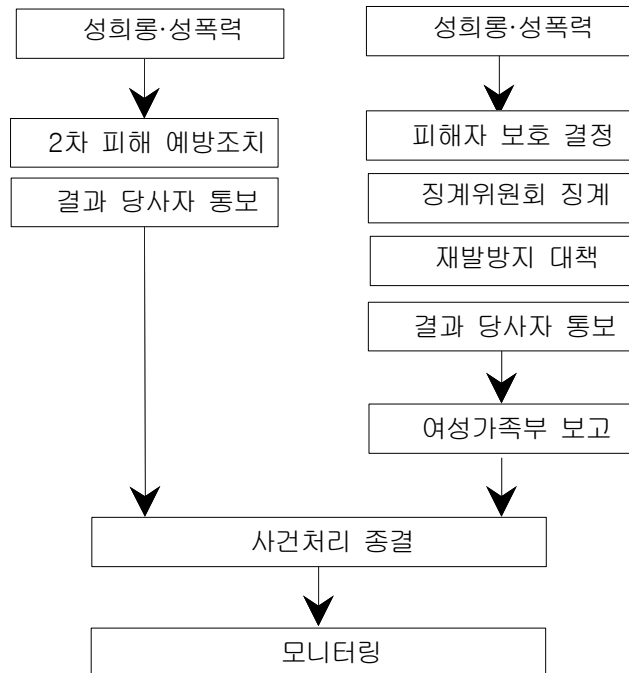
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 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 징계

사건이 성폭력으로 의결되어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고인(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로 사건을 회부하게 된다. 징계처분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학생과 직원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 총장에게 있고, 전임교원의 경우 재단에 있다. 따라서 징계는 학생 등의 경우에 학생징계위원회로, 피신고인이 교직원인 경우 교직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부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사건처리 담당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시 징계 관련하여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IV-5]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에 따른 사건처리 과정

○ 피해자

- 대학은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 신고인이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불편함, 어려움을 느끼거나 징계처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가해행위자

- 가해행위자에 대한 처분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 공간분리, 징계 등이 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신고인의 가해행위가 현행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징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건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징계 규정을 바탕으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괴롭히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 피신고인들의 다수는 사건처리 결과가 수용이 안되어 억울하고 화나며 주변으로 부터의 비난과 낙인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상태를 탐색하고 성찰하여 결과를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재통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받도록 한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심의위원회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 심의위원회 결과 징계가 결정된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은 대학 규정에 따라 가해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
- 피해자 및 가해행위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징계결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 형사고소 및 고발

학교는 형사절차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학교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병과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대법원 1984.9.11. 84누110 파면처분취소 판결).

또한 대학의 관련 규정에 위원회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는데 사건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형사 고소에 대한 최종 판결 후에는 학교의 사건절차 및 규정에 따라 사안을 진행해야 한다.

○ 피해자

- 피해자가 외부 기관을 통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형사고소 하는 경우 대학에서 사건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형사고소를 할 경우 사전에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형사고소의 취지에 대해 알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가해행위자

- 형사고소가 통보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대학의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가해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결과를 지켜보고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사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고지해 준다.
- 규정에 따라 사건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2차 피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피해자는 사건처리의 부담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당하면 불안감,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가 더하여져서 사건처리에 부담을 갖게 된다. 2차 피해의 실제 유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2차 피해 정의

2차 피해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이후 가족, 친구, 언론,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겪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탐색하게 된다.

2차 피해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 행위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며, 피해자 및 가해 행위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행동하게 되는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놓이게 되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큰 장애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 2차 피해 유형

○ 가해행위자

- 사건 내용을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헐담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행위
- 상급자에게 피해자 보다 먼저 보고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는 행위
- 지지자 그룹을 만들고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고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헐담하고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고 두둔하는 행위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사건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가해 행위자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중용하는 행위

다. 2차 피해 대응방식

○ 피해자

- 학습권과 근로권 보호를 대학에 요청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할 수 있다.
- 가해행위자를 직접 만나 해결하기보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전달하는 게 좋다.

○ 가해행위자

-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규정에 따라 2차 피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보다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 용서와 합의 역시 피해자의 선택임을 인지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주는 말은 자제한다.

- 사건을 피해자의 평소 태도, 능력, 성격 등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는다.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 하지 않는다.
-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한다.
- 가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않는다.

○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심의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 내 여론과 관련인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사건조사에 협력한 조력자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 행위자와 공간분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조치해야 한다.
- 가해행위자에게 후속조치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하며 이때 2차 가해행위 금지와 가중 처벌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 교원 및 전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우수한 사례가 벤치마킹될 필요가 있다. 한 대학교 사례는 교원이 강의계획서 업로드 전에 예방교육을 선이수하고, 학생은 수강신청 시 예방교육을 선이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동영상 예방교육의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 대학에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참고>

전국 성희롱·성폭력 신고 기관

□ 해바라기센터

시도별	운영기관	명칭	개소일	기능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10.6.23.	중앙
서울	경찰병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05.8.31.	위기지원
	보라매병원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08.12.3.	위기지원
	서울대병원	서울해바라기센터	'10.12.3.	통합
	연세의료원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4.6.18.	아동·청소년
	삼육서울병원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15.11.11.	통합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16.12.14.	통합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13.9.6.	위기지원
	부산대병원	부산해바라기센터	'16.3.1.	통합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해바라기센터	'06.5.9.	위기지원
	경북대병원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05.6.9.	아동·청소년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6.3.31.	위기지원
	인천성모병원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13.5.9.	위기지원
	가천대길병원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09.7.17.	아동·청소년
광주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06.9.4.	위기지원
	전남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05.6.29.	아동·청소년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해바라기센터	'14.12.1.	통합
울산	울산병원	울산해바라기센터	'11.12.1.	통합
경기	의정부의료원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07.9.18.	위기지원
	한도병원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13.7.24.	위기지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14.11.19.	통합/거점
	명지병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14.12.26.	통합
	분당차병원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8.12.26.	아동·청소년
강원	강원대병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12.12.12.	통합
	강릉동인병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10.9.8.	통합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해바라기센터	'06.2.8.	위기지원
	건국대충주병원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09.7.22.	아동·청소년
충남	단국대병원	충남해바라기센터	'10.1.13.	위기지원
전북	전북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	'06.2.1.	위기지원

시도별	운영기관	명칭	개소일	기능
	전북대병원	전북해마라기센터(아동)	'09.7.6.	아동·청소년
	원광대병원	전북서부해마라기센터	'17.12.20.	통합
전남	성가롤로병원	전남동부해마라기센터	'10.1.28.	위기지원
	목포중앙병원	전남서부해마라기센터	'10.9.29.	통합
경북	안동의료원	경북북부해마라기센터	'06.1.12.	위기지원
	포항성모병원	경북동부해마라기센터	'15.12.30.	통합
	김천제일병원	경북서부해마라기센터	'15.12.1.	위기지원
경남	경상대병원	경남해마라기센터(아동)	'09.8.7.	아동·청소년
	마산의료원	경남해마라기센터	'06.12.1.	위기지원
제주	한라병원	제주해마라기센터	'15.1.28.	통합

- 교육부 전화신고센터(02-6222-6060)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홈페이지)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735-7544)

참 고 문 헌

-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교수를 위한 자살·성폭력 위기개입 매뉴얼.
- 국가인권위원회(201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2.122.12).
- 노정민 외(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가족
부.
- 신상숙 외(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박소진 외(2017).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 안상수·박성정·최윤정·김금미(201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Ⅲ).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태운(2017). 경기도 대학생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매뉴얼. Retrieved from
<https://shp.mogef.go.kr/shp/htm/intro/accidentGuideline.html> (2018.4.23.)
- 여성가족부(2015). 실무자를 위한 대학 맞춤형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여성가
족부 보도자료(2012.12.23.).
- 여성가족부(2018). 공공기관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8).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 이선경(2017),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문화 예술
계_내_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2017.1.17., pp.10-24.
- 주혜진·오윤희(2018), 「2018년 대전시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직
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2018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심화교육 교재.